

譯註 華營新定式節目



절목



수원학자료총서 ③

역주

화영

신정식



수원학
자료총서

3

역주 화영신정식절목

譯註 華營新定式節目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譯註 華營新定式節目

역주 화영신정식절목

수원의 역사를 좀 더 통시적으로 이해하려면
정조 이전이나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영신정식절목』이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 절목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로서(古朝38),
장용영이 철폐된 이후인 19세기 중후반 수원의 행정, 부세,
군사 체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절목을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 수원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물론 19세기 부세 변화의
여러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학자료총서 ③

역주 화영신정식절목
譯註 華營新定式節目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번역(가나다순)

나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문광균 건양대학교 전임연구원
 송기중 충남대학교 강사
 이왕무 경기대학교 교수
 최주희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한상우 성균관대학교 전임연구원

기획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교정 문보미 전 부경대학교 강사



수원학자료총서 ③

역주 화영신정식절목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T. 031-9220-8058 H. <http://www.suwon.re.kr>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08-01
 ISBN 979-11-90343-91-6 93910
 ISBN 979-11-90343-92-3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해제	004
국역	010
화영각색군병급색구사령등요포교폐절목	010
화영장관사회절목	022
화영화포과절목	026
기사오월 일 감결판관	028
화영장리청절목	029
화영관노구폐완문	031
화영관노청절목	033
화영사령청절목	035
화영청직청구폐절목	040
화영서리청방과허삼삭수리정절목	044
화영각면군정동포절목	051
화영각면사창신설절목	078
화영각색군총소폐절목	086
화영곡작전신정식절목	088
화영본부각포세납신정식절목	092



해제

자료의 성격과 의의

수원은 조선 후기 지역사 연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까닭에 중요한 관방지역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게다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았으며 물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도 경기의 여러 군현 중 읍세가 상당히 컸다. 특히 국왕 정조는 수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그는 기존 수원 읍치에 현릉원을 짓고, 사도세자를 안장하였다. 이어서 조선 후기 화성을 축조하고, 장용영 외영을 두었다. 또한 유수부를 설치하여 광주, 개성, 강화와 함께 수도 방어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 관련 연구는 주로 현릉원, 화성, 장용영, 정조의 화성 행차 등 정조 연간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수원부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수원이 역사가 숨 쉬는 고을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정 시기와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 이후나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수원의 역사를 좀 더 통시적으로 이해하려면 정조 이전이나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영신정식절목』이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 절목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로서(古朝38), 장용영이 철폐된 이후인 19세기 중후반 수원의 행정,

부세, 군사 체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절목을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 수원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물론 19세기 부세 변화의 여러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의 구성과 내용

이 자료는 크게 15개의 절목 및 감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19세기 중후반은 서세동점의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와 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실시되었다.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은 서양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는 자구적인 노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화영신정식절목』 안에는 군사나 군사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절목이 많아 수원부의 군사개혁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각읍군병급색구사령등요포교폐절목各邑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은 이 시기 군사들과 향리들의 급료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 포세와 둔세를 거두어서 당시 군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급료를 주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군사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훈련이다. 조선시대 훈련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시사이다. 시사는 무예 시험을 보고 이에 입각하여 시상을 하는 것이었다. 장관사회절목將官射會節目은 당시 수원부의 훈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포과절목火砲科節目은 당시 군제 변화의 특성을 알려 주는 중요한 절목이라 판단된다. 이 시기 서양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는 포수부대의 확보였다. 화포과는 이러한 포

표 1 『화영신정식절목』의 구성

순번	항목
1	各邑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
2	將官射會節目
3	火砲科節目
4	將吏廳節目
5	甘結判官
6	官奴掇弊完文
7	官奴廳節目
8	使令廳節目
9	廳直廳救弊節目
10	書吏廳房窠許參朔數釐正節目
11	各面軍政洞布節目
12	各面社倉新設節目
13	各色軍摠蘇弊節目
14	穀作錢新定式節目
15	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수 부대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수원부에도 화포과절목이 남아 있어, 이 지역의 화포과 실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장리청절목, 관관에게 보내는 감결, 관노청절목, 사령청절목, 청직청구폐절목 서리청이정절목 등도 당시 이 지역의 부세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어 주목된다.

『화영신정식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면동포절목이다. 이 절목에는 동포제라는 당시 부세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포제는 균역세를 공동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부세관행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 균역세는 균역자가 납부하는 것이었다. 균역자는 양인개병제의 원칙에 따라 관직을 가지지 않은 양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와 같은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양반은 관행적으로 균역에서 탈각하고, 노비가 충원되는 현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빈번한 양역사정으로 인해 균역세가 각 군현단위 별로 정액화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제역촌이 늘어나면서 각 군현 단위에서 균역세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동포제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 동포제는 19세기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9세기 중엽에 정식화되었다. 이 자료는 지역별로 동포제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사창신설절목社倉新設節目도 19세기 이 지역의 부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절목이다. 사창은 본래 주자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 환곡이 실시되었다. 환곡은 진휼기능과 재정보용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환곡의 재정보용기능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 진휼기능이 있고 관의 입김에서 벗어난 사창을 설치하였다. 이 사창절목은 당시 수원부의 사창 실태를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각색군총소폐절목各色軍總蘇弊節目, 곡작전신정식절목穀作錢新定式節目, 본부각포세납신정식절목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등도 당시 수원부의 부세체제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華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新定式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節目

- 華營各色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
- 華營將官射會節目
- 華營火砲科節目
- 己巳五月日甘結判官
- 華營將吏廳節目
- 華營官奴揀弊完文
- 華營官奴廳節目
- 華營使令廳節目
- 華營廳直廳球弊節目
- 華營書吏廳房窠許參朔數釐正節目
- 華營各面軍政洞布節目
- 華營各面社倉新設節目
- 華營各色軍摠蘇弊節目
- 華營穀作錢新定式節目
- 華營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화영각색군병급색구사령등요포교폐절목

華營各色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본부는 서울을 끼안고 있는 요충지로서 화성부(留營)로 승격되어 체모가 높아지고 관방이 강화되었는데 절제와 규모가 예전에 재결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수원부는 중앙의 군영과 표리를 이루게 되었고, 평소에는 경기 지역의 대도회(大都會)로 불리고 있다. 부임하고 겨우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여러 사무를 철저하게 살피고 처리하지 못하였지만 제도가 자못 오래되었고, 폐단의 근원이 날로 늘어나 군용(軍用)은 조잔해지고 법의 기강이 느슨해졌다. 만약 계속 적당히 얼버무리며 방치하면 실제로 잘 이어받는 뜻이 아니다. 폐단을 고치고 경장하라는 대원군이 내리신 분부를 받들어 차차 강구하였다. 소위 조례배(皂隸輩)들이 오랫동안 영하(鈴下)에 머물렀지만 역이 번잡하고 급료가 적었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교묘하게 피해가서⁴ 실제로 구차하게 충원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영營의 체모에 창피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정녕 개탄스럽지 않은가! 대개 병사를 양성하는 것과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데 있다.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데는 별도의 다른

1 유영(留營) : 화성유수부의 유수영을 가리킨다. 수원은 조선 건국 직후인 1413년에 도호부가 되었으나, 1789년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이 수원으로 이장한 뒤 1793년 화성유수부로 승격되었다. 이후 1895년 지방제도 개편 시 다시 인천부 수원으로 되었다가 1896년 다시 경기도의 수부(首府)가 되었다.
 2 조례배(皂隸輩) : 여러 아문과 관료들에게 배속되어 사역하던 하례(下隸)이다. 조례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차정하였으며, 이들은 1년에 네 달을 입번(立番)하고 두 달은 조번(助番)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선혜청, 호조 등에서 급료를 주어 고용하였다.
 3 영하(鈴下) : 수령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수령이 있는 관아로 해석하였다.
 4 규피(規避) : 책임을 회피하여 피할 길을 피하는 일을 가리킨다. 특히 위법행위를 통해 책임을 벗어나려는 행위이다.

대책이 없는데, 각 포구와 여각이 이미 본 지역에 속하였음에도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는 정례가 없으니 이는 실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다.⁵ 그런 까닭으로 그들에게 물어 그 물품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등급을 마련할 것을 논의한 즉 1년에 거두는 것이 총 1,180냥이다. 삼도둔(三島屯) 마름이 사경(私耕)하는 8석락(石落)⁶의 소출 30석과 식주인(食主人)⁷의 첨개조(沾漑條)⁸ 57석에서 덜어낸 30석을 합한 총 조 60석을 모두 칠색군병(七色軍兵)⁹에게 속하게 하며, 관노와 사령에게는 별도로 획급할 자금이 없으므로 유수영에서 전錢 300냥을 특별히 덜어 주어 그들의 청에 따라 편의대로 식리(殖利)하게 하여 보용하는 뜻으로 절목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할 조건을 아래에 썼으니 영구히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삼가 준행하도록 한다.

1869년(고종 6) 5월 일

후	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대방(慶大房)	선주 4곳	전 300냥
옹포(甕浦) ¹⁰	선주 1곳	전 400냥
신흥포(新興浦)	선주 1곳	전 100냥
신성포(新星浦) ¹¹	선주 1곳	전 100냥
빈정포(濱汀浦) ¹²	선주 1곳	전 100냥
남문의장	여각 4곳	전 120냥
오산장(烏山場) ¹³	여각 1곳	전 30냥
	여각 2곳	전 30냥
합		전 1,180냥

5 미황지사(未遑之事) : 거를이 없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다.
 6 석락(石落) : 농경지의 면적 단위로, 법서 한 석(畝)을 파종할 정도, 또는 그 정도의 모를 심을 만한 넓이를 가리킨다. 한 마지기(斗落)의 20배에 달한다. 석락지(石落只)라고도 한다(이영훈,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참고).
 7 식주인(食主人) : 군면 단위의 마름을 가리킨다.
 8 첨개조(沾漑條) : 약간의 이득이 남도록 떼어 준 경작지를 말한다.
 9 칠색군병(七色軍兵) : 일반적으로 서울의 각 군문에 소속되었으나 경군이 아닌 병대의 종류를 말하나, 여기서는 정식으로 유수영에 속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옹포(甕浦) : 현재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에 위치하였던 포구로 저포(猪浦)라고도 한다.
 11 신성포(新興浦), 신성포(新星浦) : 옛 수원에 속하였으나 1906년 아산군으로 편입되었다.
 12 빈정포(濱汀浦) : 현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옛 포구이다.
 13 오산장(烏山場) : 현재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시장으로 1792년(정조 16) 발간된 『화성궐리지(華城關里誌)』에 기록되어 있다.

이상 매년 두 번으로 나누어 절반은 7월에 상납하고, 절반은 12월에 삼도

둔전 마름 사경답 8석락에서 타조 30석

식주인 첨개조沾漑租 30석

합			조 60석	
뇌자 ¹⁴	24명 1명당	전 11냥씩	합 전 264냥	조 10두씩
순령수 ¹⁵	24명 1명당	전 11냥씩	합 전 264냥	조 10두씩
취고수 ¹⁶	24명 1명당	전 11냥씩	합 전 264냥	조 10두씩
등롱수 ¹⁷	12명 1명당	전 11냥씩	합 전 132냥	조 10두씩
대기수 ¹⁸	20명 1명당	전 7냥씩	합 전 84냥	조 10두씩
세악수 ¹⁹	14명 1명당	전 7냥씩	합 전 98냥	조 10두씩
군막수 ²⁰	10명 1명당	전 7냥씩	합 전 70냥	조 10두씩

14 뇌자(牢子) : 어가를 시위하거나, 죄인을 체포하고 매를 때리는 등의 임무를 담당한 군졸이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후, 각 군영에 배치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존재하였으며, 최후에는 호위국에 소속되었다가 1907년 군대 해산 시에 폐지되었다.

15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 전달·호위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나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이다. 지휘관 명령을 군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37년(인조 15) 『승정원일기』에 처음 등장하며, 1907년 군대 해산 시에 폐지되었다.

16 취고수(吹鼓手) : 왕이나 고관의 행차 때 악기를 연주하던 군인이다. 특히 행렬의 앞에서 자바라, 징, 북 등의 타악기를 연주하였다. 중앙 오군영이나 지방 병영 또는 감영에서 소속되어 음악을 연주하였다.

17 등롱수(燈籠手) : 밤에 등롱(燈籠)을 들고 어가나 국장의 상여 등을 호위하던 군인이다. 1723년(경종 3) 『승정원일기』에서 처음 확인된다. 1907년 5월 18일 『대한매일신보』에 호위국 소속 등롱군 70명이 국채보상의연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는 호위국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해산되었다.

18 대기수(大旗手) : 군영에서 지휘나 명령 전달에 쓰이는 대기(大旗)를 가진 기수이다. 부대 행진 시에는 앞에서 대열을 이끌며, 전투 시에는 장수의 명령에 따라 대기를 흔들어 명령을 전달하였다. 1880년대 근대식 군대의 창설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 세악수(細樂手) : 군영에 소속되어 취고수와 짝을 이루어 음악을 연주하는 군졸로 취고수와 달리 세악수는 행렬의 뒤에 서는 악대를 일컫기도 한다. 세악수는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등을 주로 연주하였다.

20 군막수(軍幕手) : 군막을 치거나 관리하는 군졸로 보인다.

전 1,180냥 중 1,176냥의 상행조를 제외하고 남은 4냥은 매년 삼도둔의 추수秋收를 간검看檢²¹하는 군총²² 한 명이 가서 수급한다.

1. 삼도둔답 8석락의 추수는 순령수, 취고수, 등롱수 등 사색 중 매년 가장 근면히 출사한 자로써 1명을 돌아가면서 차정差定하여 내려가 검사하게 한다. 그 거두는 바가 많게는 30여 석 되는 까닭으로 30석만 항정恒定해서 납부한다. 이상의 답 중 축동築洞 물력전物力錢 11냥 3전 7푼은 예전부터 내려온 정해진 비용이다. 이 30석으로 상납한 것 외에 남은 조색租色은 작전作錢하여 해당 둔전의 감색에게 갖추어 납부한다. 위 조항의 전을 분배하고 남은 4냥은 추수를 간검看檢하는 사람이 오갈 때 노잣돈으로 지급한다.

1. 각 포구 및 여각의 세납은, 이미 물화를 매매하는 구문口文²³ 중에서 덜어내어 ‘관납官納’이라 칭하면서, 분전分錢²⁴이라도 가봉加捧²⁵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시 해당 주인을 해당 법률로써 다스려 이를 알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1. 각 포구에는 이미 공세公稅가 있으니, 불쌍히 여겨 폐단을 구제하는 방안이 없을 수 없다. 포민浦民 중 관리에게 붙잡힐 때에는 으레 3냥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정하고, 관부에 체수滯囚²⁶되었을 때의 정비전情費錢도 3냥으로 작전하여 민력을 폐게 한다.

1. 연금전捐給錢 300냥은 사령청使令廳²⁷에 200냥, 영색구營色驅²⁸ 4명에게 100냥이다. 그들에게 각별히 전수하여 매년 취식해 보용하는 자금으로 삼게 한다.

1. 세납전稅納錢 1,180냥은 이미 두 번으로 나누어서 거두도록 되어 있는데, 7월에 거두는 590냥은 해당 월 분급하고 12월에 납부할 590냥도 해당 월에 분급한다. 조 60석은 추수 후에 분급하며, 추수 간검看檢 군총軍摠 1명의 노수前路需錢 4냥은 위의 돈 중 나머지 중에서 그때에 맞추어 지급한다.

21 간검(看檢) : 두루 살펴서 검사한다.

22 군총(軍摠) : 군졸이나 군사의 총수를 말한다.

23 구문(口文) : 홍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을 가리킨다.

24 분전(分錢) : 푼돈, 많지 않은 몇 푼의 돈을 말한다.

25 가봉(加捧) : 정한 액수보다 더 걷는 것을 가리킨다.

26 체수(滯囚) : 죄가 결정되지 않아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를 말한다.

27 사령청(使令廳) : 사령이 모여 있는 곳이다.

28 색구(色驅) : 관원을 수종하는 구종(驅從)의 우두머리이다.

추절목

각 장場의 지세는 전대방慶大房에 모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군졸의 구폐전攄弊錢 300냥을 매년 나누어 상납하는 일로 절목을 만든 뒤, 금년(1869, 고종 6) 7월조 150냥은 거두어서 나누어 썼다. 가을에 이르러서 이른바 마구직馬廩直·고마등패雇馬等牌²⁹에게 환속하는 지세는 전인慶人³⁰에게 이미 300냥을 배정하여 모든 액수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 12월에 절반 조인 150냥을 전인에게 거두어, 마구직과 등패 등에게 지급한다. 1870년(고종 7)을 시작으로 위 300냥 중 각 100냥씩을 3곳에 분정하고, 7월과 12월 두 시기로 나누어 50냥씩 내어 준다는 뜻으로 절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따로 뒤에 기록하니 이것에 의거하여 준행함이 마땅하다.

1869년(고종 6) 12월 일

후 위향 전대방 배정	전 300냥 중 100냥 전대방 100냥 마구직 100냥 고마등패
----------------	---

매년 7월 각 50냥씩 바치고, 12월 각 50냥씩 바친다.

5달의 급료를 본색으로 마련하여 지급한다. 1869년 10월 초하루부터 시행한다.

호소戶所	미 101석 6두 미 46석 미 50석 팔색고八色庫조 미 60석 고마고조
책응고策應庫	미 100석
방료소放料所 ³¹	남은 미 111석 10두

²⁹ 등패(等牌) : 본래는 『기효신서』에서 본래 방패를 들고 적을 공격하는 병종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³⁰ 전인(慶人) : 가계를 차려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³¹ 방료소(放料所) : 매달 정해진 급료를 나누어 주기 위해 만든 창고이다.

외탕고外帑庫 ³²	진제고賑濟庫로 이송한 것 중 미 182석 14두
어공魚貢	혁과 미 90석
합 세입歲入	미 742석 중
지출	미 80석 뇌자 24명 매달 1명당 각 10두 미 80석 순령수 24명 매달 1명당 각 10두 미 80석 취고수 24명 매달 1명당 각 10두 미 7석 위 3색 패두牌頭 ³³ 대총隊總 ³⁴ 가료加料 ³⁵ 미 32석 대기수 12명 매달 1명당 각 8두 미 10두 패두 대총 가료加料 미 40석 등룡수 12명 매달 1명당 각 10두 미 5두 패두 가료加料 미 26석 10두 장막수 10명 매달 1명당 각 8두 미 5두 패두 가료加料 미 42석 세악수 14명 매달 1명씩 각 9두 미 5두 패두 가료加料 미 13석 5두 아세악수兒細樂手 10명 매달 1명씩 각 4두 미 2석 10두 당보수塘報手 ³⁶ 1명 매달 8두 미 2석 10두 별아병別牙兵 ³⁷ 1명 매달 8두 미 1석 10두 대포수大砲手 ³⁸ 1명 매달 5두

³² 외탕고(外帑庫) : 장용영 내영 소속의 창고로 정조의 행행과 능행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수원부 화성행궁에 소재하였다. 화성행궁의 행행과 현릉원의 능행에 사용하는 비용은 대부분 외탕고에서 지출하였다. 외탕고는 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원부 대동미 300석, 선가가승(船價加升) 44석, 진흥청 정퇴조 2,100냥, 영남 사군목 5동, 호남 전죽 100부를 매년 확보하여 수용으로 삼았다. 또한 책응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관서 소미 500석과 장용영 향군색 모조 500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원행의 지출에 대비하게 하였다.
³³ 패두(牌頭) : 5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죄인의 불기를 치는 형조(刑曹)의 사령이나 인부 10명의 두목을 가리키기도 한다.
³⁴ 대총(隊總) : 하나의 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한다. 조선 후기 중앙 군영은 영, 부(部), 사(司), 초(哨), 기(旗), 대, 오(伍)의 순서로 편제하였다.
³⁵ 가료(加料) : 정해진 급료 외에 더 지급한 급료이다.
³⁶ 당보수(塘報手) : 적군의 동정을 살피는 척후병을 말한다. 당보관 훈련이나 전투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깃발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던 제도이며, 당보수는 당보에 사용되는 당보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야간에는 깃발이 보이지 않으므로 등불을 달아 신호를 보냈으며, 이들의 성명, 연령, 부친, 거주지, 외모, 질병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당보수안(塘報手案)』을 통해 관리되었다.
³⁷ 별아병(別牙兵) : 17세기 오군영 창설이후 여기에 소속된 아병의 일종이다. 『장용영대절목』에 따르면 장용영에는 별아병장표하군 23명과 뇌자 118명 중 46명이 임번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³⁸ 대포수(大砲手) : 쐬타수 중 하나로 대포를 쏘는 자이다.

미 15석 종사관從事官 순녀巡牢³⁹ 5명 매달 1명씩 각 9두
 미 27석 책응고 사령 9명
 미 107석 5두 관노 46명 매달 1명씩 각 7두
 미 17석 5두 가료加料
 미 72석 관비 38명

모든 지출은 742석이다.

전 세입歲入 3,710냥 위 항목 각색各色 군졸, 관노와 사령은 5개월마다
 742석을 대전代錢하여 미 5석에 5냥씩
 273냥 8전 4푼 무미買米 혁파 이후 더해진 환향미還餉米⁴⁰
 170석 분은 잉여剩餘로 부쳐 막황조幕況條로 한다.

합 전 3,983냥 8전 4푼 중
 지출 548냥 8전 진제고賑濟庫로 이송한 미 182석 14두 값 석당
 3냥씩
 1,801냥 8전 호방 서리 米 257석 6두 값 석당 7냥씩
 700냥 책응고 색리 米 100석 값 석당 7냥씩
 558냥 3전 3푼 방료放料⁴¹ 米 111석 10두 값 석당 5냥씩
 374냥 9전 1푼 장예고獎藝庫⁴²로 이송

모든 지출은 3,983냥 8전 4푼이다.

1869년(고종 6) 9월 27일 중군(中軍)에 전령을 보냄

잘 살펴서 거행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본부의 어공이 혁파된 후 공미貢米를 연례
 年例로 지출하는 것은 사체가 심히 무의하다. 이번 가을을 시작으로 대동미 90석을 일절
 지출하지 말고 본영의 군수에 보태도록 하는 일로 대원군께서 내리신 하교를 받들어 이
 에 전령을 보내며, 지금 예고禮庫 색리에게 분부하여 다시는 출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³⁹ 순녀(巡牢) : 순령수와 뇌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⁴⁰ 환향미(還餉米) : 부족한 군량을 채우기 위해 설치된 보향곡(補餉穀)의 일종이다. 향곡의 보충은 주로 원납(願納)
 이나 납속(納粟)을 통해 이루어졌다.
⁴¹ 방료(放料) : 매월 급료를 지급하는 일이다.
⁴² 장예고(獎藝庫) : 무예를 장려하기 위해 설치된 창고로 생각된다.

대동색大同色 영수營需 남은 미 69석 5두 중
 지출 28석 원두한園頭漢⁴³ 7명 명당 4석씩
 6석 영고자營庫子 1명 청고자廳庫子
 1명 각 3석씩
 모든 지출은 34석이다.
 남은 미 35석 5두 대동 색리에게 출급한다.

추절목

남문외장의 여각 4곳 중 1곳의 객주 이영근李英根이 죽어 운영하지 않으므로 군졸
 구폐전掾弊錢 120냥을 3곳의 여각 주인에게 동등하게 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납부하
 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70년(고종 7) 8월 일
 爲成給事 本府以拱護重地 陞爲留營 體貌既尊 關防增鞏 節制規模 何莫非昔年 睿裁
 攸暨 而與京營相爲表裏 素稱畿輔大都會矣 莅營纔過數朔 凡百事務 雖未及到底周察 而
 制置頗久 弊源日滋 軍容凋殘 法紀解紐 若復因循任置 則實非繼述之義 而伏承大院位
 教是 分付矯揉更張之方 次第講究是在果 所謂皂隸輩 長待鈴下 役煩料殘之致 舉皆規避
 未免苟充 營樣之昌披 莫此爲甚 寧不慨歎哉 蓋養兵足食在於裕財 而裕財別無他策是在
 如中 各補口與旅閣既屬本境 尙無稅納之定例 寔是未遑之事也 故質問於渠等 參互其物
 論分等磨鍊 則一歲所捧 合爲壹千壹百捌拾兩是遣 三島屯舍音私耕畝石落所出租參拾
 石 及食主人沾漑條伍拾柒石內 除出其參拾石 合租陸拾石 並屬之於七色軍兵是跡 至若
 奴令 則別無劃給之資 故錢參百而自營門特爲捐給 使渠矣廳從便取殖 以爲補用之意 著
 成節目 應行條件 列錄于左爲去乎 永久勿替 恪勤遵行 宜當向事

己巳五月 日

後 塵大房 錢參百兩

⁴³ 원두한(園頭漢) : 오이 · 참외 · 수박 등을 기르는 원두밭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甕浦船主肆處	錢肆百兩
新興浦船主壹處	錢壹百兩
新星浦船主壹處	錢壹百兩
濱汀浦船主壹處	錢壹百兩
南門外場旅閣肆處	錢壹百貳拾兩
烏山場旅閣壹處	錢參拾兩
旅閣貳處	錢參拾兩
合	錢壹千壹百捌拾兩

以上 每年分兩等 折半則七月納上 析半則臘月納上次

三島屯舍音私耕畝捌石落打	租參拾石
食主人沾漑	租參拾石
合	租陸拾石

牢子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式 租拾斗式	合 錢貳百陸拾肆兩 租貳百肆拾斗
巡令手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式 租拾斗式	合 錢貳百陸拾肆兩 租貳百肆拾斗
吹鼓手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式 租拾斗式	合 錢貳百陸拾肆兩 租貳百肆拾斗
燈籠手十二名	每名錢拾壹兩式 租拾斗式	合 錢壹百參拾貳兩 租壹百貳拾斗
大旗手十二名	每名錢柒兩式 租拾斗式	合 錢捌拾肆兩 租壹百貳拾斗
細樂手十四名	每名錢柒兩式 租拾斗式	合 錢玖拾捌兩 租壹百肆拾斗
帳幕手十名	每名錢柒兩式 租拾斗式	合 錢柒拾兩 租壹百斗

錢壹千壹百捌拾兩內 壹千壹百柒拾陸兩上行條除在肆兩 每年 三島秋收看檢軍摠 一
名往回路需給

一 三島屯畝捌石落秋收段 牢巡吹燈四色 每年以首勤仕 輪回差定一名 使之下去看檢
是矣 所收優爲參拾餘石 故參拾石券 恒定以納是遣 右畝築坳物力錢拾壹兩參柒柒
分 即是由來之數也 此則以參拾石納上外 餘剩租色作錢 備納於該屯監色爲於 上
項錢分排餘條肆兩 秋收看劍之人往回時 以路需上下是齊

一 各浦及旅閣稅納 既是物貨賣買之口文餘條中除出者也 稱有官納 若或分錢加捧之
弊 則該主人 施以當律 知此惕念是齊

一 各浦既有公稅 則不可無顧恤蘇弊之方是如乎 浦民中若有官差推捉之時 則例給錢
以參兩 酌之 滯囚官府之時情費錢 亦以參兩酌之 以紓民力是齊

一 捐給錢參百兩段 使令廳貳百兩 營色驅四名處壹百兩 使渠矣各別典守 每年取殖以
爲補用之資是齊

一 稅納錢壹千壹百捌拾兩 既是分兩等捧上 則七月所捧伍百玖拾兩 當朔分給 臘月所
捧伍百玖拾兩 亦爲當朔分給 租陸拾石 秋收後分給是於 秋收看劍軍摠一名路需錢
肆兩 就右錢餘條中 臨其時 從便上下是齊

追節目

各場地稅 合屬於厪大房 故軍卒救弊錢參百兩 每年分等納上事成節目後 今年七月條
壹百伍拾兩 卽爲捧上排用是加尼 及至秋間 所謂地稅 還屬於馬廐直 雇馬等牌處 則厪人
許 已排定參百兩 不可全數責納 故今十二月折半條壹百伍拾兩 分捧於厪人 馬廐直等牌
等處 使之上下是在果 自庚午爲始 上項錢參百兩 各壹百兩式 分之於三處 七臘兩朔 分
兩等 伍拾兩式排納 以爲出給之意 追成節目 區別後錄爲去乎 依此遵行宜當向事

己巳十二月 日

後

上項	厪大房排定	錢參百兩內
		壹百兩 厪大房
		壹百兩 馬廐直
		壹百兩 雇馬等牌

每年七月 各伍拾兩式納上事 十二月 各伍拾兩式納上事

五朔錢料以本色米磨鍊上下秩 己巳十月朔爲始

戶所 米一百一石六斗
 米四十六石
 米五十石 八色庫條
 米六十石 雇馬庫條

策應庫 米一百石

放料所餘在 米一百一十石

外帑庫移送賑濟庫中 米一百八十二石十四斗

魚貢革罷 米九十石

合歲入 米七百四十二石內

下 米八十石 牢子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八十石 巡令手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八十石 吹鼓手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七石 右三色牌頭隊摠加料
 米三十二石 大旗手十二名 每朔每名各八斗
 米十斗 牌頭隊加料
 米四十石 燈籠手十二名 每朔每名各十斗
 米五斗 牌頭加料
 米二十六石十斗 帳幕手十名 每朔每名各八斗
 米五斗 牌頭加料
 米四十二石 細樂手十四名 每朔每名各九斗
 米五斗 牌頭加料
 米十三石五斗 兪細樂手十名 每朔每名各四斗
 米二石十斗 塘報手一名 每朔八斗
 米二石十斗 別牙兵一名 每朔八斗
 米一石十斗 大砲手一名 每朔五斗
 米十五石 從事官巡牢五名 每朔每名各九斗
 米二十七石 策應庫使令九名
 米一百七石五斗 官奴四十六名 每朔每名各七斗
 米十七石五斗 加料
 米七十二石 官婢三十八名

合下 七百四十二石

錢歲入 三千七百十兩 上項各色軍卒奴令 五朔料
 七百四十二石代錢米每五石五兩式
 二百七十三兩八錢四分 質米革罷後添還餉米
 一百七十石價 剩餘付之幕況條米

合 錢三千九百八十三兩八錢四分內

下 五百四十八兩八錢 移送賑濟庫米一百八十二石
 十四斗價 每石三兩式
 一千八百一兩八錢 戶房書吏米二百五十七石六斗
 價 每石七兩式
 七百兩 策應庫色吏米一百石價 每石七兩式
 五百五十八兩三錢三分 放料米一百一十石十斗價
 每石五兩式
 三百七十四兩九錢一分 移送獎藝庫
 合下 三千九百八十三兩八錢四分

己巳九月二十七日 傳令中軍

爲知悉舉行事 本府魚貢革罷之後 貢米之年例上下事甚無義 自今秋爲始 同米九十石
 一並勿施 付之本營軍需事 奉承大院位教是教意 茲以傳令爲去乎 卽爲分付於禮庫色吏
 更勿出

給 宜當向事

大同色營需餘 米六十九石五斗內
 下 二十八石 園頭漢七名 每名四石式
 六石 營庫子一名 廳庫子一名 各三石式

合下 三十四石

餘在 米三十五石五頭 出給大同色吏

追節目

南門外場旅閣四處內一處 客主李英根身死勿設 故同軍卒掾幣錢壹百貳拾兩 排定於
 三處旅閣主人爲去乎 依此捧納 宜當向事

庚午八月 日

화영장관사회절목

華營將官射會節目

옛날에 화성유수부를 둔 것은 우리 정조께서 깊은 효심과 넓은 계책으로 선침仙寢을 보호하고 경사京師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계략이 굉위하고, 규모가 진밀한 것은 지금에 감히 의논을 허용치 않고 군용을 웅장하게 하여 왕의 기업을 공고히 한 데 있어서는 심상한 관방關防에 과연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 병사를 단련시키고 무술을 익히는 방도에 관계되는 것이 어찌 혹 조금이라도 소홀하였겠는가? 매달 상시사賞試射¹와 상시포賞試砲²를 전례에 따라 준행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미진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즉위하신 이래 교리와 군민을 물론하고 강하고, 활 쏘고, 말달리고, 포를 쏘는 중에 장기에 따라 숙련시키라는 뜻으로 누누이 명령을 내려 신칙하였는데, 당시에는 장래의 효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큰 영에 흠이라 할 것은 장관³의 사회謝會를 권장하지 않는 한 가지이다. 또 지금 다양한 조련 날짜를 보니 사회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예를 시험하는 방도와 상벌의 절차를 한결같이 경영문京營門의 예에 따르되 응당 이행해야 할 일을 아래에 조목으로 열거하였으니 마땅히 영구준행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1 상시사(賞試射) : 상을 주는 시사(試射)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각 군문(軍門)의 군병에게 대대적으로 행하던 무예 시험인 중순(中旬)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2 상시포(賞試砲) : 상을 주는 사격 시험이다.
 3 장관(將官) : 각 군영의 종 9품 초관(哨官) 이상의 무관이다.

시사試射하는 규구規矩

1. 유엽전 8순, 편전 1순, 기추 1순, 합 10순 중에서 네 번 맞추는 사람을 취한다.
1. 여러 장관들이 외촌과 속읍에 흩어져 있어서 매달 한두 차례 시험에 응하면 왕래가 번거로울 듯하다. 특별히 사중삭四仲朔⁴에 설행하되, 석 달 간격으로 설행하는 조와 합시습試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옳다. 어느 달이든 관계없이 한 차례씩으로 마련한다.
1. 여름, 겨울 기예를 시험할 때 기추驕驕는 말이 지나는 길에 빙니氷泥가 생기면 경영례京營例에 따라 유엽전으로 시험을 대신한다.

시벌施罰

1. 당하장관은 첫 번째 차례에 네 번 미만 맞추면 3일 번을 선다. 두 번째 차례에 네 번 미만 맞추면 6일 번을 선다. 세 번째 차례에 네 번 미만 맞추면 벌로 9일 번을 선다. 네 번째 차례에 네 번 미만 빗나가면 15일 번을 선다.
1. 첫 번째, 무분無分⁵이면 벌로 6일 번을 선다. 두 번째 무분이면 곤장을 친다. 세 번째 무분이면 자락自落⁶이다.
1. 강서講書와 진법陣法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벌로 3일 번을 한 번 서고, 두 차례 모두 갖추지 못하면 3일 번을 두 번 서고, 세 차례 모두 갖추지 못하면 곤장을 치고 연달아 네 차례 모두 갖추지 못하면 태거汰去한다.

시상施賞

1. 1년을 통틀어 계획하여 마지막 달에 시상한다. 활쏘기에 으뜸인 자는 쌀 1석, 무명 2필 대신 한 동전 4냥을, 강講에서 으뜸인 자는 쌀 반 석, 무명 1필 대신 동전 2냥을 마련한다.
 전錢은 예고藝庫에서 차하할 것을 권장하고, 쌀은 책응고에서 차하한다.

1869년(고종 6) 5월 일

1. 사중삭四仲朔에 쓰는 종이, 벼루, 먹 또한 책응고에서 차하한다.

4 사중삭(四仲朔) : 사철의 가운데 달인 2월, 5월, 8월 11월을 뜻한다.
 5 무분(無分) : 과녁에 활을 하나도 맞추지 못한 것을 뜻한다. 『기효신서(紀效新書)』에는 '구중(九中)은 초등(超等), 팔중(八中)은 상상(上上), 칠중(七中)은 상중, 육중(六中)은 상하, 오중은 중상(中上), 사중은 중중(中中), 삼중은 중하(中下), 이중은 하상(下上), 일중은 하중(下中), 무분(無分)은 하하(下下)로 상격의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6 자락(自落) : 저절로 낙방하는 것이다.

[백지 2속 후지 10장은 시책⁷과 방목⁸용으로 사회射會 때마다 지급한다. 벼루 3자루, 먹 1정은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在昔設營 猗歟 我正廟朝達孝宏謀 爲拱護仙寢也 爲捍蔽京師也 籌略之宏偉 規模之縝密 有非敢容議於今 而至若壯軍容而鞏王基也 果非尋常關防之可比 則凡係鍊兵訓武之方 寧或少忽也哉 所以每朔賞試射砲 依已例遵行 然猶有未盡到處 故茲以來 不論校吏軍民人等 講射馳放中 從所長熟嫻之意 屢屢令飭 姑未知來效之如何 偌大此營所可欠者 無將官射會之勸獎 一款 且見今多岐操鍊之日 不可無射會之舉 故試技之方 賞罰之節 一依京營門例 而應行事件 條列于下 以爲永久遵行之地 宜當向事

試射規矩

- 一 柳葉箭八巡 片箭一巡 騎騶一巡 合十巡 取四中
- 一 諸將官散在外村與屬邑 逐朔一二次赴試 似煩去來 特以四仲朔設行 而其間三朔條合試計劃是矣 勿論某朔 只以一次式磨鍊是齊
- 一 夏冬試技時 騎騶段 以其馬路冰泥 依京營例 以柳葉箭代試是齊

施罰

- 一 堂下將官段 初次未滿四矢罰番三日 再次未滿四矢罰番六日 三次未滿四矢罰番九日 四次未滿四矢罰番十五日 是齊
- 一 初次無分罰番六日 再次無分決棍 三次無分自落是齊
- 一 講陣俱不 則罰番一三日 兩次俱不 則罰番二三日 三次俱不 則決棍 連四次俱不 則汰去是齊

施賞

- 一 通一年計劃 終朔試賞 而射居首 米壹石 木貳疋 代錢肆兩 講居首 米半石 木壹疋 代錢貳兩磨鍊是齊
- 錢獎藝庫上下 米策應庫上下

己巳五月 日

7 시책(試冊) : 시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성적을 매긴 책자이다.
8 방목(榜目) : 각종 과시(科試)의 합격자를 적어 놓은 책자이다.

一 四仲朔所用紙筆墨 亦策應庫上下次

【白紙貳束 厚紙拾張 試冊及榜目次 每射會時上下 筆參柄墨壹丁 一年都下】





화영화포과절목

華營火砲科節目

爲成給事 凡係武備 何莫非關重 而至若火砲 尤爲此時之不可少忽者 故既有朝令 册設砲科 惟以擇人才 壯軍容爲務 則何可以擢科者之地閥微下 專阻其疏通之階乎 本營段毋論某色 軍摠中登第者 這卽差授別軍官 而旗牌別武及守堞軍官等校列 無碍移差 以示勸獎之意事 著成節目爲去乎 依此永久遵行 宜當向事

己巳五月 日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대개 국방[武備]에 관련된 것으로 어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는가마는, 화포火砲와 같은 경우 더욱 이 때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조정의 명령이 있어 포과砲科를 창설하였다.¹ 오직 인재人才를 택하고 군용軍容을 장중히 하는 것을 임무로 삼을 것이니 어찌 포과 합격자의 문벌이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소통을 막을 수 있겠는가? 본영은 무슨 병종[兵]인지 상관하지 않고 군총軍摠 중 과거에 급제한 자는 바로 별군관別軍官으로 차출하여 제수하고, 기패관과 별무사[旗牌別武]²와 수첩군관守堞軍官³ 등 장교는 다른 곳으로 차출하지 않게 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절목을 작성하여 만들고, 이에 따라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5월 일

- 1 화포과(火砲科) : 포군은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과 속오군에 포수가 배치되면서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군종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해안에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고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발발하면서 해방(海防)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자, 경기감사 유치선의 요청으로 포군의 사격술을 연마하기 위한 화포과가 설치되었다.
- 2 기패별무(旗牌別武) : 기패관과 별무사를 뜻한다. 기패관은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속한 장교(將校)의 하나로, 훈련도감의 기패관은 모두 일반 병사들 중에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기타 군영에서는 병사 출신, 금군 출신, 무과출신, 환산(關散) 출신 등을 섞어 임명하였다. 별무사는 훈련도감의 마병과 금위영 및 어영청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혀서 뒷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을 뜻한다.
- 3 수첩군관(守堞軍官) : 전쟁,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군관의 하나로, 평시에는 대부분 벼슬 서는 대신 신미(身米)를 바쳤다.



기사오월 일 감결판관

己巳五月日 甘結判官

이 감결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대부의 장례 시 묘상각²과 제청, 삼물막³을 각 면과 연로沿路와 각 참站到 분정했는데, 병풍과 휘장[屏帳], 자리[鋪陳] 등은 곧 한 관아의 큰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한 번 역을 지는 데 들어가는 것이 많게는 수백 금이고, 적어도 40~50금을 내려가지 않는데, 모든 액수를 민간에 책임 지워 징수하니 오직 저가난한 백성은 또한 무슨 죄인가? 이러한 민폐는 반드시 혁파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써 감결을 보낸다. 지금 이후로 묘각, 제청, 삼물막의 병풍, 휘장, 자리, 포진을 분정하는 한 가지 사안은 영과 관아 간에 일질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각 면에 신칙하고 정식으로 밝혀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右甘爲士大夫家葬禮時 墓上閣祭廳三物幕之分定 各面及沿路各站 屏帳鋪陳等屬 卽是一府之大痼癘也 一經是役容入 多至數百金 少不下四五十金 而全數責徵於民間 惟彼殘民 抑又何辜 此等民弊不可不痛革乃已乙仍于 茲以發甘爲去乎 從今以往 墓閣祭廳三物幕屏帳鋪陳遮日分定一款 營府間一不許施之意 令飭各面 著爲定式 永久遵行 宜當向事

1 감결(甘結) :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리는 문서로서 명령·지시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찰사가 수령에게 명령을 내릴 때 작성되기도 하고, 어사가 지방을 순찰하며 내린 행정조치가 감결로 작성되기도 했다.
2 묘상각(墓上閣) : 장사지낼 때 묘혈 위에 세우는 뜰집을 말한다.
3 삼물막(三物幕) : 매장할 때 쓸 석회·모래·백토를 섞기 위하여 세운 뜰집을 말한다.

화영장리청절목

華營將吏廳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대개 장토庄土를 살피고 수호하는 책임은 오직 마름의 부지런함이나 게으름에 달려 있다. 만일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폐기되는 대로 한토閑土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본영本營의 둔토屯土는 경외境外에 소재하고 있어서 방임하여 수호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래 마름의 명색名色이 문득 수령의 재임 기간[等內]에 교체한다고 일컬으며, 심지어 양반의 집에서도 번갈아 가며 차출되기를 도모한다.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바탕만을 일삼으며, 농사에 힘쓰는 방도를 전혀 몰라서 씨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는 것에 매번 그때를 놓치고, 이작移作¹하고 탈경奪耕²하는데 시기에 구애받지 않아서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안도할 수가 없고 둔토는 모두 장차 진폐陳廢될 것이니, 이와 같다면 그 마름의 본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각 둔토의 마름은 반드시 둔토 근처의 거주민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선발하여 그에게 수행하게 한다. 만약 죽거나 죄를 범하여 바꾸어 차출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둔토의 거주민에게 공의公議에 따라 선발하여 정한 후, 감관과 색리가 번갈아 가며 운현궁雲峴宮³에 가서 여쭙고 분부分符를 듣고 대신할 사람을 차출하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만드니 장리청將吏廳의 벽에 걸어 두어 늘 보고 정성스레

1 이작(移作) : 논이나 밭의 작인(作人)을 바꾸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 탈경(奪耕) : 경작지를 빼앗아 경작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3 운현궁(雲峴宮) :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사저를 말한다.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1869년(고종 6) 5월 20일

爲成給事 凡係庄土看護之責 惟在舍音之勤慢 而如非其人 百弊俱生 隨以廢棄歸於閑土 勢所必然是在如中 本營屯土 處在境外 任他守護者 非今斯今 而挽近舍音名色 輒稱等內交替 甚至班戶 輪回圖差 惟事利己之資 專味務本之方 播耘收穫 每失其宜 移作奪耕 不拘臨時 轉成痼弊 居民無以安堵 屯土舉將陳廢 如此則烏在其舍音之本意乎 自今以後 各屯舍音 必以屯底居民中 另擇其可堪者 使之隨行是矣 如有身故與犯科之不得不改差者 使該屯居民 從公擇定後 監色輪回往稟于雲峴宮 以爲聽分付差代之意 茲成節目爲去乎 揭付于將吏廳壁 常日恪遵 宜當向事

己巳五月 二十日



화영관노구폐완문

華營官奴球弊完文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본영의 노비들이 쇠잔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정상을 일찍이 짐작하였지만 부임한 이후 크고 작은 것들을 통찰하고 여론[物議]을 상세히 살펴보니, 이른바 관노비의 절반이 도망쳐서 겨우 명색만 남아 있었다.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역[使役]의 가짓수는 정해져 있으나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실로 의뢰할 길이 거의 없는[賴薄] 소치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으므로 매번 기피하고 차출되기를 원치 않는다. 혹 억지로 책립한 자는 곧 부랑하고 패잔한 부류인데 노비안[奴婢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번번이 포흠¹하므로 끝내 해당 청에 징수하게 되고, 청의 모양은 이로 말미암아 날로 탕패해지니 빠르게 수습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매우 불쌍하고 측은함을 듣고, 폐단을 소생시킬 방법을 강구해 보니, 영이시營貳市를 세람포소細藍庖所에서 돌아가며 열고, 그것을 획부[劃付]하여 세입을 징수하게 하여 이로써 보태어 폐단을 보완할 재원으로 삼는 것이 좋다. 해당 청이 모양을 이루는지의 여부는 오직 포소包所의 보전 여부에 달려 있다. 인근의 제청현祭廳峴·덕현德峴·가리천加里川·용수동龍水洞·대황교大皇橋·울현粟峴 등 사설 포소 6곳은 지금부터 일절 금지하고 세람포細藍庖에서 폐단 없이 판매하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발급하니 영구히 준행하

1 포흠(逋欠) : 포(逋)는 조세 포탈 혹은 관물(官物)의 사사로운 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현물제정이 주를 이루어 중앙과 지방의 재정창고에 곡식과 포목을 저장하고, 회계장부로 재원의 출입을 관리하였다.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는 하급관원이 사적인 용도로 곡식을 전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사적인 포흠 외에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취식(取殖)을 꾀하였다가, 기근으로 이자곡의 수취뿐만 아니라 원곡마저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어 부득이 포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는 것이 마땅하다.

1869년(고종 6) 5월 일

추절목

색구色驅 4명에게 별도로 지급할 돈 100냥은 여인閩人 김화용金化龍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취식取殖하게 하되 매년 잉여조 30냥씩을 12월에 받아서 의자衣資에 보태 쓸 비용으로 삼으니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1869년(고종 6) 6월 일

여인閩人 김화용金化龍 전 100냥

보증 수노首奴인 노奴 완손完孫

爲成給事 本營各隸凋殘難支之狀 曾已領略 而莅任以後 洞察巨細 詳究物議 則所謂官奴 逃亡過半 僅存名色 應行使役 備數無人 此實由於賴薄之致 而惟其如是 故每每厭避 不願差出 其或強令責立者 卽是浮浪悖類 案付未幾動輒欠逋 畢竟徵及於該廳 廳樣由是 而日益蕩敗 駸駸然收拾無何是如 故聞甚矜惻 講究其蘊弊方略後 營貳市輪回之細藍庖所 使之劃付 取其稅入 以爲沾漑補弊之資是矣 該廳之成樣與否 惟在於此庖之完不完如何 隣近私設之祭廳峴德峴加里川龍水洞 大皇橋栗峴等 六處庖所 自今爲始 一切禁防 使細藍庖 無弊興販之意 成完文以給爲去乎 永久遵行 宜當向事

己巳五月 日

追節目

色驅四名處 別下錢壹百兩 逢授於閩人金化龍 使之取殖 而每年剩條參拾兩式 臘月捧入 以爲衣資補用之資 永久勿替 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閩人 金化龍 錢壹百兩

保首奴完孫



화영관노청절목

華營官奴廳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지금 관노비들이 호소한 바에 “성안궐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전답[無稅田畝]은 지난 1827년(순조 27)에 척량尺量하여 나누고, 집복執卜하여 (관노청에) 소속시켜 관노청에게 미나리와 채소 등을 진배進排하는 수요에 보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책자冊子를 만들어 그것으로 전수典守²하게 했으나, 근래 누락되어 서로 매매賣買하는 지경에 이르러 다시 사적인 전답이 되었으므로 진배하는 시기에 당진되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고 한다. 양안量案을 취해 살펴보고 여론을 서로 참고하니, 결부수는 순서대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공전公田과 관계되고 수용 또한 긴요하나, 유실되고 사사로이 전매한 것에 있어서는 진실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장리將吏를 정하여 척량尺量하고, 일일이 추심推尋하여 관노청官奴廳에 도로 붙여서 폐단을 보완하여 자생資生하는 방도로 삼게 하고, 양안을 수정하여 아울러 완문完文³을 만들어 지급한다. 이후에 만약 거짓을 빙자하여 몰래 파는 폐단이 있으면 공전公田과 공답公畝를 타인에게 중첩하여 매매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에 따라 시행하며, 지금 혹 전매轉買라 칭하며 가본價本을 넓히고자 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역시 공전을 몰래 산 죄를 처벌하는 법률[公田潛買律]에 따라 엄히 처단할 것이니, 이를 준수遵守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

1 집복(執卜) : 집복은 전답의 농작물에 대한 풍흉을 실제로 답사하여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던 일을 말한다.
2 전수(典守) : 곡식이나 물건을 맡아서 지키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3 완문(完文) : 조선시대 부동산에 대해 관아가 증명하는 문건을 말한다.

하다.

1869년(고종 6) 6월 일

爲成給事 卽者官奴等所訴內 以爲城內外無稅田畝 去丁亥年 分尺量執卜屬之矣 廳俾
補水芹蔬菜等進排之需 而別成冊子 使之典守矣 挽近漏落 以致轉相賣買之境 便成私畝
進排之節 蕩掃無餘是如爲置 取考量案 參互物議 則卜數第次 昭然可據是如乎 旣係公田
需用且緊 而至若見失私自轉賣者 誠甚乖當 故特定將吏尺量 推尋一一還付於官奴廳 以
爲補弊資生之方 修正量案 竝以完文成給爲去乎 後若有藉託潛賣之弊 則公田公畝與他
有重賣買者 竝依律文施行爲旡 今或以轉買爲說 欲推價本 携貳起鬧者 則亦依公田潛買
律 嚴勘處斷 以此遵守 永久勿替 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화영사령청절목

華營使令廳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본영 각 노비들의 잔폐함이 매우 심하므로 지금 차
레차레 바로잡고자 하니, 사령 등에게 전錢 200냥을 본영에서 지급하고, 이로 하여금
취식하여 보태 쓰도록 한다. 전수典守의 방법은 영구히 보전하기 어려우니, 여각旅閣
및 각 상점 주인에게 맡겨 두고 매년 잉여조 60냥을 두 번에 거두어들인데, 30냥은 6
월에 내게 하고 30냥은 12월에 내도록 한다. 돈을 거두는 유사有司는 해마다 번갈아 가
며 각별히 거행하고, 기한을 넘겨 죄를 짓게 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뒤에 절목을 수
록하니, 바꾸지 말고 준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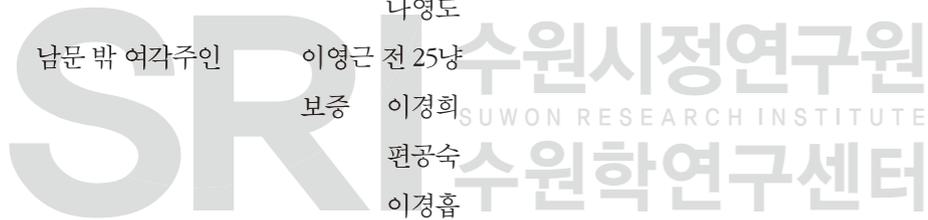
1869년(고종 6) 6월 일

후

입전	양산근 전 20냥
	보증 변암석
	권영서
	나영도
	변암석 전 20냥
	보증 양상근
	김성여
	나영도

김성여 전 20냥
 보증 변암석
 나영도
 권영서
 나영도 전 20냥
 보증 양상근
 변암석
 권영서
 권영서 전 20냥
 보증 양상근
 김성여
 나영도
 이영근 전 25냥
 보증 이경희
 편공숙
 이경흡
 이경희 전 25냥
 보증 이영근
 이경흡
 편공숙
 편공숙 전 25냥
 보증 이경희
 이영근
 이경흡
 이경흡 전 25냥
 보증 이영근
 이경희
 편공숙

남문 밖 여각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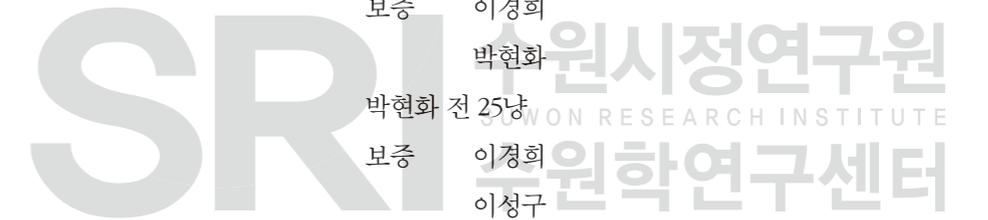
추절목

남문 밖 여각주인 이영근이 죽은 후 설치하지 않았고, 편공숙은 이성구에게 집을 팔고, 이경흡은 박현화에게 집을 팔았다. 그러므로 이 원전 100냥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분배하게 맡겨 둔다. 절목을 뒤에 기록하니 영구히 준행함이 마땅하다.

1870년(고종 7) 8월 일

후

남문 밖 여각주인	이경희 전 50냥
	보증 이성구
	보증 박현화
	이성구 전 25냥
	보증 이경희
	보증 박현화
	박현화 전 25냥
	보증 이경희
	보증 이성구



爲成給事 本營各隸 凋殘莫甚 故今方次第矯揉 而使令等處 錢貳百兩 自營捐給 使之取殖補用是矣 典守之方 難保其永久 逢授於旅閣及各塵人處 每年剩條陸拾兩 分兩等收捧 而參拾兩則六月當納 參拾兩則臘月當納 而收錢有司段 逐年輪回 各別舉行 俾無違限 抵罪之意 後錄成節目以給爲去乎 勿替遵行 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後

立塵	梁尙根	錢貳拾兩
	保	邊巖石
		權永瑞
		羅永道
	邊巖石	錢貳拾兩
	保	梁尙根

金性汝
 羅永道
 金性汝 錢貳拾兩
 保 邊巖石
 羅永道 羅永道
 權永瑞 權永瑞
 羅永道 錢貳拾兩
 保 梁尙根
 邊巖石
 權永瑞 權永瑞
 權永瑞 錢貳拾兩
 保 梁尙根
 金性汝
 羅永道
 南門外旅閣主人 李英根 錢貳拾伍兩
 保 李慶熙
 片公叔
 李慶洽
 李慶熙 錢貳拾伍兩
 保 李英根
 李慶洽
 片公叔
 片公叔 錢貳拾伍兩
 保 李慶熙
 李英根
 李慶洽
 李慶洽 錢貳拾伍兩
 保 李英根
 李慶熙
 片公叔

追節目

南門外旅閣主人李英根 身死後 不爲設始 片公叔賣家於李性九 李慶洽賣家於朴玆和 故同原錢一百兩 從渠願更爲分排逢授 後錄節目爲去乎 永久遵行 宜當向事

庚午八月 日

後

南門外旅閣主人 李慶熙 錢伍拾兩
 保 李性九
 朴玆和
 李性九 錢貳拾伍兩
 保 李慶熙
 朴玆和
 朴玆和 錢貳拾伍兩
 保 李慶熙
 李性九





화영청직청구폐절목

華營廳直廳球弊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본영의 크고 작은 제도들은 경사京司와 서로 표리가 되니 모든 의절의 모양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근래 법이 오래됨에 폐단이 생겨서 조잔해짐이 심하므로 고질적인 폐단을 따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일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였다. 그 가운데 청직廳直의 인원이 50명이 되어 역시 하나의 청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맡은 일(任使)이 다른 것과 매우 다르다. 근래의 일로 보건대 중대한 행차가 1년에 몇 차례 있고, 배행(陪行)¹의 출참(出站)²도 전적으로 담당하여 거행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스레 왕래하는데도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고달파하며 굶주려 울부짖는 지경을 면치 못한다. 그 궁색하고도 피해가 심하므로 돈 100냥을 영문에서 특별히 별도로 지급하여(別下)하여 전수하는 방도로 삼고자 한다.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려움을 염려하여 널리 묻고 의견을 가려서 수원부 아래의 각 시전 상인들에게 내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취식하게 하여 매년 이자조로 30냥씩을 한 해의 수입으로 정한다. 멀고 가까운 곳에 출참할 때 말 대여료와 노자는 그 여정과 일자를 계산하여 헤아려 지급하고, 1년에 지출 비용에서 만약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취식하는 데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효의 뜻이 있도록 한다. 후록에 규식을 정하고, 절목을 만들어 지급하니 삼가 각별히 준수하여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

1 배행(陪行) :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를 수행하는 일이다.
 2 출참(出站) : 각 고을에서 가까운 지역의 역참에 인원이나 물력(物力)을 보내는 일을 말한다. 역참은 조선 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賓客)을 접대하기 위하여 각 주(州)와 현(縣)에 둔 객사를 일컫는다.

한 일이다.

1869년(고종 6) 6월 일

후

- 출참할 때의 노자(路需)는 매 10리에 1전, 말 대여료는 매 10리에 2전씩 마련한다.
- 인배(印陪)³ 시 출참은 기마(騎馬)를 예대로 창고에 있는 것을 내어 지급한다. 이는 예전대로 내어 주고 노자만 여정을 계산하여 내려 준다.
- 노자와 말 대여료를 시전상인에게 거두어 올 때는 영부(營府)의 수청직(首廳直) 6인이 연명하여 표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허와 실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 매년 연말에 수청직 6인이 일제히 시전상인에게 가서 표적(標蹟)을 대조하고 써 버린 것을 제하고 남은 액수를 회계하여 시전상인에게 더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취식하게 하여 허록(虛錄)하는 폐단을 막는다.
- 그 지급한 것과 회계하여 남은 것에 따라 하나의 책자로 만들고 일일이 기록하여 뒷날에 참고할 바탕으로 삼는다.
- 각 시전상인 중에 봉수(逢守) 1인을 가려 뽑아 지급하는(拮下) 절차를 그로 하여금 전관하여 거행하게 한다.
-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시전상인	양상근(梁尙根) 전 20냥
보증	김성여(金性汝)
변암석(邊巖石) 전 20냥	
보증	나영도(羅永道)
권영서(權永瑞) 전 20냥	
보증	양상근(梁尙根)
나영도(羅永道) 전 20냥	
보증	변암석(邊巖石)

3 인배(印陪) : 고위 관료 및 관부의 인신(印信)을 공적인 목적으로 수행하여 옮기는 일을 말한다. 인신은 나무·쇠붙이·돌에 문자를 새겨 증빙을 삼는 것이다. 제왕(帝王)이 쓰는 것은 새(璽), 관리는 인(印), 평민은 사인(私印)이라 하였다. 인배 시에는 이를 전달하는 사람(通引)과 말이 주어졌다.

김성여 金性女 진 20냥
보증 권영서 權永瑞

保 邊巖石
金性女 錢貳拾兩
保 權永瑞

爲成給事 本營制置 小大畢舉 與京司互相表裏 凡百儀撻 可以比觀矣 挽近以來 法久弊生 凋殘莫甚 故隨其痼瘼 可以矯揉者矯揉 更長者更長 多般講究是在果 其中廳直額爲五十 亦一成廳者也 最近任使 與他迥殊 而以近日事觀之 則重大行次 一年幾次 陪行出站 專當舉行 跋涉往來 且無路需之磨鍊 未免德茶呼飢之境 其所窘踣且置披爲甚乙仍于錢壹百兩 自營門特爲別下 而典守之方 常患鮮克有終 博詢採議 出給府底各塵人 使之取殖 每年以利條參拾兩式 酌定歲入 遠近出站時 馬賁也 路需也 計其程道及日字 量宜上下 就其一年用下 如有幾許餘存 則添付殖利 俾有終始實效之意 後錄定規 成給節目爲去乎 恪勤遵守 永久毋替 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一 出站時 路需則每十里壹錢 馬賁則每十里貳錢式 磨鍊上下是齊
- 一 印陪出站 則騎馬例自庫入下出給者也 此則依前入下 而路需益計程上下是齊
- 一 路需馬賁 推來于塵人處時 營府首廳直六人 聯名成標 俾無中間虛實相蒙之弊是齊
- 一 每年年終 首廳直六人 齊往塵人處 考準標蹟 除其用下 會計餘數 添附塵人 使之殖利 俾杜虛錄之弊是齊
- 一 隨其上下與會在 成一册子 一一懸錄 以爲後考之地是齊
- 一 各塵人中 擇定逢守一人 捧下等節 使之專管舉行是齊
- 一 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塵人	梁尙根	錢貳拾兩
	保	金性汝
	邊巖石	錢貳拾兩
	保	羅永道
	權永瑞	錢貳拾兩
	保	梁尙根
	羅永道	錢貳拾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영서리청방과허삼삭수리정절목

華營書吏廳房窠許參朔數釐正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각 읍의 서리를 순서대로 임명하는 일(肩次)은 전후로 척교飭敎가 매우 엄중하고 조정의 논의도 거듭되어, 외읍外邑에서 거행함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영에서는 1854년(철종 5)에 자리를 나누는 것(分窠)을 해서 폐단을 없애고 논란을 잠재우는 계책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적폐가 쌓이는 것이 거듭되는가? 중임자(重來者)가 비록 정규 인사(換房)의 하루 전에 부임했다라도 자신의 재임기간(朔數)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순서에 따라 정규 인사(房窠)에 참여하니, 아랫사람은 올해 인사(當差)에서 어떤 자리에 임명될 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서 혹은 실망하고 혹은 낙심하여 그들의 불만이 심했다. 1862년(철종 13)에 최소 재임기간을 정하고 후에 절목을 만들어 시행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중임자 중 세력을 믿는 부류가 편법(蹊徑)을 통해 자리에 임명되기를 청탁하여 폐단이 이전과 같아졌으니 정식의 본뜻은 어디에 있는가? 막중한 조칙을 어려움 없이 훼손하니 진실로 떳떳한 본성이 있다면 어찌 이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받들어 시행하는 도리로 보아 실정을 바로잡고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유를 모두 갖추어 대원군께 보고를 올린 후 따로 절목을 만들었다. 이에 이전에 복직되었던 자와, 명령을 받은 달부터 정규 인사(房窠) 때까지 10개월이 되지 않은 자는 향리 인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다. 만약 이같이 정식한 후에 등급을 넘어 자리에 임명되기를 꾀하는 자가 또 있다

1 방과(房窠) : 육방(六房)의 신무자(新務者)를 뽑아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면, 마땅히 향리를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재론을 허락하지 말며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영영 바꾸지 말아야 마땅할 일이다.

1869년(고종 6) 7월 일

후

1. 중임자는 입역(立役)하는 달로부터 환방 때까지 10개월이 차지 못하였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 이미 10개월의 기한을 정하였으므로 해당하는 달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방은 매해 10월로 정한다. 중임자는 정월부터 근무를 섰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1. 규칙이 정해진 후, 만약 위세를 믿고 청탁을 도모하거나 위반하여 자리에 임명된 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²

추절목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중임자 서리에게 10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방과(房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를 뛰어넘고 등급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을변인(乙邊人) 가운데 차례가 되어 복직하는 자는 10개월을 지난 후에 방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갑변인(甲邊人) 가운데 차례가 되어 복직하는 자는 비록 10개월을 채웠다 하더라도 방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물러나 이듬해의 정규 인사(派房)를 기다린 후 비로소 방과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다. 방과의 차례는 이미 당초에 정한 규칙이 있으니 그 등급을 나눔에 마땅히 헤아려야 할 것이 있다. 뇌물을 받고 임명한 것에 대해 살필 때 후함과 박함의 전후가 약간 다르더라도, 결단코 그 사이에서 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할 수 없다. 만약 다시 정한 법식을 어기거나, 차임하기를 도모하여 폐단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을 올리고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일이다. 대원군께서 내리신 분부를 받드니, 이 법식에 의거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영구히 바꾸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다.

1870년(고종 7) 10월 일

2 제태(除汰) : 군인이나 하리 등의 구실을 때는 것을 말한다.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여러 서리들의 업무는 오로지 관아의 서류를 주고 받는 것에 달려 있는데, 나이가 노쇠한 지경에 이르고 눈이 흐려 보이지 않는다면 막중한 문서의 일을 함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정규 인사(房窠)에 구애되어 매번 나이가 많은데도 물러나지 않고, 곧 놓고먹는 자리를 만드니 공사(公事)를 생각하면 극히 통탄스럽다. 지금을 시작으로 서리의 연한을 65세로 정하고, 해당하는 나이에 과방한 후에 소를 올려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죄를 저질러 물러난 것과 차이가 있으니 다년간 성실히 고생한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아들, 손자, 아우, 조카, 사위 가운데 서리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바꿔 임명해, 넉넉히 구휼하는 뜻을 보이게 한다. 대원군께서 내리신 분부를 받들어 절목을 만드니, 이 정식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영구히 바꾸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다.

1870년(고종 7) 윤10월 일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서리(書吏)가 피폐해져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른바 남겨진 재물(遺財)은 옛날부터 많은 양이 아닌데, 세입은 일정한 액수가 있고 쓰임에는 끝이 없는 것은 곧 영부의 승발(承發)을 방과에 붙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승발과 명색(承發名色)을 아울러 혁파하고, 연산둔과 호례(戶禮)의 자리를 합쳐 하나의 과窠로 삼아서 다음 차례에 영의 승발을 담당할 서리에게 급대(給代)한다. 신천둔색(信川屯色)을 하나의 과로 삼고, 다음 차례에 본부 승발을 담당할 서리에게 급대한다. 그리고 승발은 문서 출납이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신중한 서리를 뽑아서 거행하지 않을 수 없고 1년간의 업무강도도 고려해야 할 바다. 그러므로 동북서원(東北書員)과 압정서원(鴨汀書員)을 영의 승발에 임명하고, 형석서원(荊石書員)과 일용서원(日用書員)을 본부의 승발에 임명하여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삼는다. 서원의 업무는 겨울 3개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서로 방해가 되는 경우

3 서리청(書吏廳) : 문서의 기록 및 수발을 맡은 아전 중 하나인 서리(書吏)가 사무를 보던 곳이다.
 4 승발(承發) : 아전 또는 서리 아래에서 잡무를 보는 자이다. 특히 문첩(文牒)을 수보하며 전관(傳關)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5 급대(給代) : 어떠한 행정조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6 동북서원(東北書員) : 동북면의 서원이다. 서원은 중앙과 지방 관청에 소속되어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자들로 기관(記官)이라고도 한다. 서리(書吏)가 없는 고을에 배치되었다. 지방의 서원은 수령과 아전의 지시를 받으며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요역은 면제되었으나 녹봉이나 거관 등은 받지 못했다.
 7 압정서원(鴨汀書員) : 압정면의 서원이다.
 8 형석서원(荊石書員) : 형석면의 서원이다.
 9 일용서원(日用書員) : 일용면의 서원이다.

가 있다. 승발의 업무는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까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교체하게 하며, 청용(聽用) 등의 절차는 서리 가운데 노련하고 근간이 되는 자 12인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규칙으로 정하고 절목을 만들어 발급하니, 이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오래도록 바꾸지 말아야 마땅한 일이다.

1870년(고종 7) 윤10월 일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서리의 전수전(傳授錢)을 100냥으로 마련한 것은 당초 여력을 헤아려 편리를 따른 방법으로 매우 합당하여 다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혹자가 본역을 매매할 때 결정된 값이 점차 갑절로 늘어나서 지금과 그 때를 비교하면 전수전 100냥은 심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당 관청이 의견을 모은 뒤, 동 전수전에 100냥을 더해 도합 200냥을 전수전으로 정해 절목을 만들어 발급한다. 지금 이후로 이 규칙에 의거해 오래도록 바꾸지 말아야 마땅할 일이다.

1870년(고종 7) 윤10월 일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서리의 방과 가운데 호적색(戶籍色)¹⁰은 원래 정규 인사 자리(房窠)가 아니다. 그러므로 매번 식년에 권세자에 의탁해 출세하려는 사람(攀援)이 '정원 이외의 자리'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임명되기를 도모해서 분쟁이 매우 심하였다. 이후 그 녹봉을 헤아려 영구히 원래 방과로 만들어 함부로 임명되는 폐단을 막도록 할 것이니, 장차 이것을 가지고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870년(고종 7) 12월 일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서리의 정규 인사(房窠)를 지금 이정(釐正)하였는데 그 가운데 계서서리(啓書書吏)¹¹ 및 수복(守僕)¹²은 처음에 정한 법식이 없어서 매년 정규인사(派房)를 할 때에 차출되기 원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이 또한, 서열 순서대로 차출(差給)하는 방식과 권점(圈點)¹³하여 차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식 규례로 정하는 내

10 호적색(戶籍色) :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아전이다.
 11 계서서리(啓書書吏) : 지방 관아에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계서(啓書)를 쓰는 서리이다.
 12 수복(守僕) : 사용원에 소속되어 청소 등을 맡아 보던 노자를 가리키기도 하나, 여기서는 묘(廟)·사(社)·능(陵)·원(園)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수복청(守僕廳)에 속한 아전이다.
 13 권점(圈點) : 담당 관원을 선발할 때, 후보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각기 뽑고자 하는 자의 이름에 점을 찍어 가장 많은 점을 얻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용의 전령傳令이 있었는데, 여러 이서가 고하길 “계서啓書는 글을 능숙하게 쓰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서열 순서대로 충원하는 조목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매년 환방換房할 때마다 글을 잘 쓴다는 기준에 합당한 자가 몇 사람인지 회의할 수 있겠는가? 의망하고 권점하여 점수가 많은 자를 차출하도록 한다. 수복은 방과로 만들어 능소陵所에 붙이는데, 서원의 아래로부터 내공방內工房¹⁴의 위까지가 사리에 합당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이에 절목을 작성하니 이것으로써 성실히 준수하고 오래도록 바꾸지 말아야 마땅한 일이다.

1870년(고종 7) 12월 20일

爲成給事 各邑吏任從肩次差給事 前後飭教截嚴 廟籌申複 外邑舉行 靡不容極 本營則甲寅分窠 可以爲祛弊息鬧之策矣 夫何奸僞層生 重來者 雖於換房前一日入屬 不計朔數 一從座次 輒皆參窠 則居下之人 意謂今年當差爲某窠是如可 忽地見退 或有失望 或有落空 齷鬱莫甚 及夫壬戌 作定朔數追成節目而遵行 未幾重來怙勢之類 藉其蹊徑 圖囑差任 弊復如前 烏在其定式之本意哉 莫重朝飭 無難毀劃 苟有彛性 寧容若是 其在對揚之道 不可不矯揉更張 故具由仰稟于大院位教是後 另成節目爲去乎 茲以往復屬者 自行下月至換房月 未滿十朔者 更勿許參窠是矣 如是定式之後 復若有躡等圖差者 則當該吏之施以當律 無容更議 責當有所歸 恪勤遵守 永久勿替宜當向事

己巳七月 日

後

- 一 重來之人 自立役月至換房月 未滿十朔 則勿許參窠事
- 一 既定十朔之限 則不可不確定月當矣 換房每以十月爲定 則重來之人 自正月以上入役 使之許參房窠事
- 一 定式之後 若有怙勢圖囑 違越差任者等 稟除汰事

追節目

爲成給事 書吏重來人之準十朔後 許參房窠者 卽防遏其越次躡等之階梯也 乙邊人代

復屬者 則準十朔後許參房窠 甲邊人代復屬者 雖滿十朔 勿許參窠 退待翼年派房 始爲許參房窠是旃 房窠第次 既有當初定規 則其所分等 宜有參量者 存以其任賴 厚薄之前後稍異 斷不可陞降於其間矣 若復有違越定式 圖差生弊者等 稟除汰之意 著式施行事 奉承大院位教是分付是如乎 依此恪遵奉行 永久勿替 宜當向事

庚午十月 日

爲成給事 諸吏之舉行 專在於文牒之去來 而年至衰老 眼昏精迷 則莫重文簿 不無錯誤之慮 拘於房窠 每多老而不退 便成臥食之窠 言念公事 極庸痛歎 自今爲始 書吏年限以六十五歲爲定 當年派房後 使之呈訴自退是矣 此與犯科退去者有異 多年勤苦 亦不可不念 以其子孫弟姪婿中可堪吏任者 特爲移差 俾示優恤之義 奉承大院位教是分付 著成節目爲去乎 依此恪遵 永久勿替 宜當向事

庚午十月 日

爲成給事 書吏廳凋殘難支之狀 曾已洞悉無餘是在果 所謂遺財自來無多 歲入則有定數 用下則無限節 卽由於營府承發之付於房窠故也 從今爲始 承發窠名色并爲革罷 以連山屯及戶禮復合爲一窠 給代於營承發當次之吏 以信川屯色作爲一窠 給代於本府承發當次之吏是遣 承發段 出納文簿 亦係劇務也 不可不以謹慎之吏 擇定舉行 而一年勤勞亦所當念 故以東北書員 鴨汀書員 付之營承發 荊石書員 日用書員 付之本府承發 以爲酬勞之資是矣 書員舉行 在於冬三朔 則自有相妨之端 承發舉行段每十月爲始 翌年九月至準十二朔 使之交替是旃 至若聽用等節 書吏中 擇定老鍊幹幹者十二人 輪回主管之意 并爲定式 成節目 以給爲去乎 依此恪遵 永久勿替 宜當向事

庚午閏十月 日

爲成給事 書吏傳授錢 以一百兩磨鍊者 初因量力從便之道 則極其稱停 更無餘議 而或者本役之賣買也 論價漸就倍蓰 以今較之 則一百兩傳授太涉零星 故自該廳使之收議後 同傳授錢 加定一百兩 合二百兩 酌定著式 成節目 以給爲去乎 自今以往 依此例 永久勿替 宜當向事

庚午閏十月 日

爲成給事 書吏房窠中戶籍色 此非原定房窠也 故每當式年 有攀援者 稱以窠外之窠 曲徑圖差 紛競莫甚是如乎 此後段量其料賴 永付於原房窠中 以杜橫差之弊爲旃 將此成

¹⁴ 내공방(內工房) : 과거(科擧)에서 시장(試場)을 관리하고 시관(試官)을 공궤하는 아전이다.

節目 永久遵行 宜當向事

庚午十二月 日

爲成給事 書吏房窠 今既釐正 而其中啓書書吏及守僕 初無定例 每年派房時 不無圖差之弊 此亦肩次差給與圈點差出間 指一定規之意 有所傳令是加尼 諸吏等所告內 啓書則能書者 可以堪任 非人人所可填差者 則肩差一款 不可舉論 每於換房之時 以能書可合者幾人會議 呼望圈點 從多差給 守僕段 作爲房窠 付之於陵所 書員之下 內工房之上 恐合事宜是如乙仍于 茲成節目爲去乎 以此恪遵 永久勿替 宜當向事

庚午十二月二十日



화영각면군정동포절목

華營各面軍政洞布節目

이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문營門에 부임한 후 본부의 폐막弊廢을 상세히 궁구하니 군정軍政 한 가지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단서가 되었다. 만약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으면 서민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고 공납公納은 채워질 방법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절실히 변민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영으로 승격된 초기 감두減斗·감액減額은 화성의 백성을 깊이 생각한 은택으로 지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고 간사한 거짓이 날로 불어나서 백성이 내는 양의 경중(輕重)이 균일하지 않게 되고, 군오軍伍가 비거나 침역을 지는 일이 더욱 많게 되었다. 부득이 1863년(고종 1)에 미전米錢을 고루 배분하고 1867년(고종 4)에 동안洞案을 정해 발급해준 일은 어찌 시의적절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군민배軍民輩가 피하는 습속이 갈수록 더 심해져 세력이 조금 있는 자(勢力稍饒者)들은 여정餘丁이 있어도 모두 면제되거나,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은 사람마다 번번이 고통을 받아 심지어 황구黃口나 백골白骨한테까지 징수하거나 한 집에 4~5정丁이 첩납疊納하는 사례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화성의 백성이 근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예전에 온전하고 성하던 면이 지금은 피폐한 동洞이 되기도 하였고, 민호民戶가 점점 감축되는데 이르러 첩정竊丁하는 것도 문란해졌다. 이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진실로 계술繼述하는 방도이나 괴롭기만 하고 좋은 계책은 아니었는데, 이때에 대원군께서 내린 전교를 받아

이 전교의 뜻으로서 동포洞布¹의 편부便否를 경내 대소민大小民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가 편하고 좋다고 하고 다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의 공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읍은 이미 시행하는 일에서라?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 지금 법을 고칠 때 만약 핵심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다면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지경에 돌아가기 쉽다. 그러므로 먼저 가좌家座를 누차 살살이 조사해 가령 몇 동洞이 몇 호戶라면 그 중 사궁四窮² 등 가장 가난한 자를 제외한 대소를 막론한 모든 민호에게 원래 받아야 할 미전米錢의 수효를 분배하고, 각 그 동에게 기일에 맞추어 수납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일 이같이 정식定式한 후에 다른 마음으로 내지 않는 호가 있다면 이는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법대로 처리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동포를 마련하는 것은 군안軍案에 첨명簽名하는 것과 달라 한 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정사가 되니, 대민大民도 마땅히 즐겁게 도와야 하므로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이러한 뜻으로 경내 대소 백성들이 소상히 깨우치게 할 것이다. 각 면과 동에서 응당 내야 할 미전의 숫자와 응당 행해야 할 조례는 여론을 모아 합당하게 하고,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1869년(고종 6) 7월 일

지난번 동포의 일에 대해 대원위께서 내리신 교시에 따라 각 면, 각 동에 편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여론이 모두 같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러므로 대소 민호 및 각양 잡탈과 모면자冒免者를 하나로 합쳐 호를 계산하여 배정하고 응당 시행할 조건을 일일이 적어서 절목을 만들어 보냈으니 이에 따라 거행한다. 대개 근래의 군폐軍弊는 소민小民이 지탱하기 힘든 폐막이다. 소민이 지탱하기 어렵다면 대민大民도 역시 어찌 전거奠居할 수 있겠는가? 한 동의 기강을 주관하며 한 동의 모범이 되

1 동포(洞布) : 군역세가 호포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수취체제이다. 영조 연간 양역실총의 반포로 각 군현 별 군역이 정액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군역세의 납포화도 지속되어 대부분의 군역을 역가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결합하면서 생겨나는 군역세 납부 체제가 바로 동포제이다. 군역이 정액화되고 군역이 역가를 내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각 군현 단위에서 내야 할 액수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현에서 제역촌 등이 생겨나 군역을 면제 받는 고을이 늘어나자 제역촌으로 지정되지 않는 군현에 부담이 가중되어 갔다. 군현에서는 내야 할 군역세가 늘어남에 따라 특정 군역자에게만 역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각 군현에 부담할 군역세를 호 단위로 분배하여 다시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동포제라고 한다. 이 동포는 호포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후 호포법 실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사궁(四窮) : 환(鰥), 과(寡), 고(孤), 독(獨) 등 네 종류의 궁민(窮民)이다.

는 자인 대민이 한 동이 와해되는 것(離散蕩析)을 어찌 좌시하여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서울에 사는 유력가(卿宰家)는 혹 몇 백 냥의 전을 덜어서 묘촌墓村·농촌農村에 내어 주어 식리하여 역에 응하는 비용으로 삼았다. 서울에 사는 사대부가士大夫家は 혹 몇 십 민緡의 전을 주어 본동本洞·본리本里가 근본을 보존하고 역을 돕는 방법으로 삼았다. 진실로 모두 이와 같았다면 대민이 사는 동에 소민이 어찌 치우쳐 고통받고 지탱하기 힘든 폐단이 있었겠는가? 지금 이 동포洞布를 운용하는 자들은 동중洞中에서 균등히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균미, 균전이라 여기므로 대민이 소민과 더불어 균등하게 징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이미 말했듯이 동포는 동미洞米이고 동전洞錢이니, 어찌 일찍이 과정庖丁³과 더불어 역에 응하는 것을 똑같이 균미軍米·균전軍錢이라 부르겠는가? 대민의 도道는 진실로 소민을 불쌍히 돌아보아 힘에 따라 도움을 주어 거주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당연한 일은 어찌 권면勸勉을 기다려 하리오? 각자 찾아내고 헤아려서 따로 도모하여 공공을 구제하는 것을 기약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하여금 실효가 있게 하되, 만일 혹 영척畝飭을 준수하지 않고 감히 의견을 분분하게 하고 방해하는 논자論者가 있다면 마땅히 해당 민인民人이 즉각 영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리게 하고 법률에 따라 처단해야 할 것이다. 모두 자세히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7월

절목

본부의 군오는 처음부터 상변하는 예가 없고 단지 미를 내는 역만 있었다.⁴ 미를 내는 것에는 양인과 노비가 6두, 4두의 구별이 있었다. 영으로 승격되는 때에 미쳐서 특별히 감액·감두 되었고, 두액斗額으로 줄어든 것은 또한 양호兩湖의 모곡으로 급대하여 화성 백성을 진념하는 은택이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심이 날로 간교해지고, 군폐軍弊가 자라나서 무거운 것은 피하고, 가벼운 곳으로 나아가니 군오의 허첩虛疊이 서로 이어졌는가? 부득이 1863년(고종 즉위)에 미전을 균등히 배분하

3 과정(庖丁) : 장정을 역에 충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조선시대 군역을 지는 방안은 크게 장변, 상변, 납포, 고립 등 네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장변은 직업군인으로 급료를 받고 실역을 지는 사례, 상변은 지방 사람이 일정기간 서울에 와서 역을 서는 경우, 납포는 실역 대신 역가를 내는 사례, 고립은 군영에서 필요한 인력을 급료를 주고 동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장변이나 상변 인원은 줄어들고 납포나 고립하는 인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언급한 것이다.

고, 1867년(고종 4)에 동안洞案을 정해 지급한 준 일이 있었으니 어찌 시의적절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군민들이 피하는 습속은 더욱 심해지고, 힘이 있고 넉넉한 자(勢力稍饒者)는 (집안에) 여정餘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면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은 사람마다 번번이 징수하였다. 심지어 어린아이(黃口)나 죽은 사람(白骨)도 주사朱絲나 진포陳布를 바치는 원망에 이르렀으니, 슬프게도 이 소민들이 어찌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겠는가? 폐단이 지극한 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바로잡아 그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괴롭게도 좋은 계책이 없었다. 바야흐로 절실히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대원군께서 내리신 교시를 삼가 받았다. 동포라는 한 가지 일은 과연 수원부의 가장 마땅한 정사이니, 이 교의에 따라서 동포의 편부便否를 경내 대소민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가 편하고 좋다고 하였으며 다른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의 공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도 다른 읍에서 이미 시행해본 일에서랴?

지금 법규를 개정할 때에 만약 충분히 핵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데 돌아가기 쉽다. 그러므로 가좌家座⁵를 누차 살살이 조사하여 가령 모 동이 몇 호라면 그 가운데 궁민을 제외하고, 대호大戶·소호小戶를 막론하고 동 전체에 원래 받아야 할 미전의 수효를 분배하면 호당 미 3두 2승, 전 5전 8푼이 된다. 지금부터 이것으로 정식해 그 동에서 내는 미전을 면임面任⁶·동장洞長이 기일에 맞춰 해당 지역에서 거두어 내는 것이 옳다. 이 정식 후에 만약 다른 마음을 품고 내지 않는 호가 있다면 이는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법대로 처리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이 동포를 마련하는 것은 한 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정사이니 대민大民도 즐겁게 돕지 않겠는가? 참고별로 내고 지출하는 실제 수효는 전에 정한 절목에 있고, 면리에 나눈 것과 응당 거행할 여러 조목은 다음과 같이 나열해 기록했으니 이에 따라 영구히 준행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7월

1. 각 군정은 원액이 1만 2,871명이므로 매 명당 미 3두씩 거두면 총 2,574석 3두가 되고, 전 5전씩 거두면 총합이 6,435냥 5전이 된다. 이번 경내에서 뽑은 호(抄戶)의 원수가 합이 1만 3,174호가 되니 이 중에서 궁핍한 호를 제외하면 실호實戶는

총 1만 2,182호가 된다. 미를 내는 총수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689호이고, 또 능원소 보군保軍 258명의 번전⁷ 516냥 및 홍천의 봉수보군 104명의 번미 20석 12두, 번전 52냥은 급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上下차에 모두 하나로 합쳐 마련한다면 매 호당 미 2승, 전 8분씩 수를 더해 배분한다.

1. 동포를 정한 후 배분된 미전은 매년 동洞 중에서 수량에 따라 내는 즉, 호수가 비록 증감이 있다 해도 원래 내야 하는 금액(原納)은 줄이는 것(贏縮)이 불가하다. 이것은 오직 본 동에서 계수計數하고 나누어 내는 데 달려있으니 여러 모양의 호를 불러 모아서(某樣招集) 많은 호에 적게 배분되는(戶多排少) 효과가 있도록 기약한다.
1. 사대부가가 만약 해마다 수납收納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별도로 동중에서 전재錢財를 주어 그것으로 식리를 취해서 나누어 내(排納)는 것도 불가하지 않으니 이것 역시 오직 본호本戶에서 헤아려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1. 지금 가좌家座의 남은 누호漏戶⁸와 잘못된 기록을 급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반드시 없을 것인즉, 미전을 내는 수와 본동 호총戶總이 적거나 많아 가지런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면, 이것은 본동에서 단지 내는 미전의 총수로서 모두 합쳐 분배하여 힘을 균등하게 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1. 미전의 납부를 마치는 것은 전처럼 10월 그믐 내를 기한으로 삼고 만일 기한을 넘어서도 내지 않는 호가 있다면 면임과 동임洞任이 일일이 관에 보고하고 잡아다 독촉하도록 한다.
1. 각 동의 동장은 풍력風力이 있고, 근착根着하고 근실하여 건딜 수 있는 자로서 동중에서 의견을 모아 택해 정하여 보고하여 거행하게 한다.
1. 지금 이 동포는 오로지 대소를 균평하게 하고, 호구를 늘려 넉넉하게(增羨)하는 방책이 된다. 그러므로 성내에서 급료를 받아먹는 향리·군교·관도(三班)도 마련하는 중에 들인다. 그러나 정초군精抄軍이나 대년군待年軍⁹의 경우 홀로 거주하는 자에게는 역이 중첩되니, 정丁이 많은 다른 호로 옮겨 정한다.

각면동포분획도총

수미고

5 가좌(家座) : 가좌는 집의 위치를 말한다. 조선시대 지방관은 가좌책을 이용해 각 호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였다.
6 면임(面任) : 면에서 호적 및 기타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다.

7 번전(番錢) : 역을 서는 대신 내는 역가이다.
8 누호(漏戶) : 호적대장에서 탈루한 호이다.
9 대년군(待年軍) : 예비 군역 보충자로, 나이가 되면 해당 군역에 충원되었다.

종덕		미 46석 14두 전 127냥 6전
오타		미 28석 12두 전 78냥 3전
숙성		미 19석 9두 4승 전 53냥 3전 6푼
공향		미 78석 7두 6승 전 213냥 4전 4푼
어탄		미 66석 2두 전 179냥 8전
광덕		미 60석 8두 8승 전 164냥 7전 2푼
압정		미 90석 10두 전 246냥 5전
갈담		미 45석 3두 4승 전 122냥 9전 6푼
삼봉		미 69석 14두 6승 전 190냥 2전 4푼
남부	구천동	미 33석 4두 2승 전 90냥 4전 8푼
	산루동	미 17석 13두 8승 전 48냥 7전 2푼
	지 동	미 12석 12두 전 34냥 8전
	장지동	미 7석 10두 2승 전 20냥 8전 8푼
	고등촌	미 4석 8승 전 11냥 2푼
	매산동	미 4석 13두 6승 전 13냥 3전 4푼

	매향동	미 18석 11두 6승 전 8냥 7전
	남창동	미 45석 13두 전 124냥 7전
	세 동	미 8석 1두 6승 전 22냥 4푼
	교 동	미 3석 9두 4승 전 9냥 8전 6푼
합계		미 666석 10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전 1,812냥 5전 내 1,666냥 5전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가전 146냥 향수고에 내어 준다.
향수고		
남면		미 84석 4두 전 229냥 1전
용복		미 45석 9두 8승 전 124냥 1전 2푼
토진		미 55석 13두 4승 전 151냥 9전 6푼
형석		미 49석 7두 4승 전 134냥 5전 6푼
우견		미 96석 3두 2승 전 261냥 5전 8푼
오정		미 55석 13두 4승 전 151냥 9전 6푼
일용		미 36석 4승 전 98냥 6전
남부	지장동	미 6석 6두 전 17냥 4전

북부	상광고	미 7석 7두 전 20냥 3전
	지죽동	미 3석 9두 4승 전 9냥 8전 6푼
	동 촌	미 7석 3두 8승 전 19냥 7전 2푼
	둔 촌	미 6석 6두 전 17냥 4전
	구천동	미 1석 13두 8승 전 5냥 2전 2푼
	화산동	미 1석 13두 8승 전 5냥 2전 2푼
	장안동	미 16석 12두 8승 전 45냥 8전 2푼
	보시동	미 38석 9두 2승 전 104냥 9전 8푼
	북수동	미 11석 7두 8승 전 31냥 3전 2푼
	신평동	미 39석 7두 전 107냥 3전
	군기동	미 19석 3두 전 52냥 2전
	별 리	미 1석 1두 전 2냥 9전
합계		미 585석 5두 8승 9두 2승 수첩청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586석 내 5두 8승 보향고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5두 2승 포청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7두 서고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10두 양정소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6두 충익소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6두 6승 산장초의 부족분으로 내어 준다. 20석 12두 홍천봉수의 보군번미로 내어 준다. 558석 10두 본고에서 본디 획급한다.
지출 합계		582석 2두 6승
합계		여미 3석 12두 4승 향교모입번전조로 급대할 것 전 1,591냥 5전 2푼 146냥 수미고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71냥 1전 8푼 보향고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33냥 6전 2푼 포청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23냥 5전 8푼 수첩청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13냥 7전 서고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3냥 7전 양정소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22냥 7전 충익소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39냥 4푼 산무별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6냥 1전 4푼 산수첩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26냥 3전 8푼 산동별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26냥 6전 8푼 산장초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22냥 3전 2푼 산보별의 가획조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전 2,026냥 5전 6푼 516냥 능원소보군번전의 급대조로 내어 준다. 52냥 홍천봉수보군번전의 급대조로 내어 준다. 1,396냥 5전 본고에 본디 획급하는 조목이다.
지출 합계		전 1,964냥 5전 여전 62냥 6푼 향교모입번전조로 급대할 것
보향고		
남곡		미 94석 4두 4승 전 256냥 3전 6푼

태촌	미 90석 10두 전 246냥 5전
청호	미 44석 12두 전 122냥 8전
매곡	미 66석 12두 6승 전 182냥 5전 4푼
남부 남수동	미 33석 4두 2승 전 90냥 4전 8푼
합계	미 329석 12두 2승 5두 8승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330석 3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806냥 6전 8푼 내 825냥 5전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71냥 1전 8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포청	
양간	미 29석 13두 전 81냥 2전
포내	미 75석 4두 6승 전 204냥 7전 4푼
송동	미 50석 2두 전 136냥 3전
북부 석산동	미 2석 5두 2승 전 6냥 3전 8푼
합계	미 157석 9두 8승 5두 2승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158석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428냥 6전 2푼 내 395냥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33냥 6전 2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수첩청		
팔탄	미 101석 8두 2승 내 100석 14두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9두 2승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전 276냥 8푼 내 252냥 5전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23냥 5전 8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서고		
문시	미 58석 4승 전 157냥 7전 6푼	
북부 하광교	미 6석 6두 전 17냥 4전	
고양동	미 2석 11두 6승 전 7냥 5전 4푼	
합계	미 67석 3두 7두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67석 10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182냥 7전 내에 169냥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13냥 7전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양정소		
북부 역촌	미 20석 10두 4승 전 56냥 2전 6푼	
관길동	미 3석 12두 6승 전 10냥 4전 4푼	
합계	미 24석 8두 10두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25석 3두 본소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66냥 7전 내
63냥 본소에 본디 획급한다.
3냥 7전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충익소

정립 미 50석 8두 4승
전 137냥 4전 6푼

초평 미 53석 40두 6승
전 146냥 7전 4푼

합계 미 104석 8두
6두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104석 14두 본소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284냥 2전 내
260냥 5전 본소에 본디 획급한다.
21냥 7전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산무별

초장 미 45석 9두 8승
전 124냥 1전 2푼

상홀 미 35석 9두 4승
전 96냥 8전 6푼

안녕 미 78석 4두 4승
전 212냥 8전 6푼

추사삼도 미 40석 8두 시가時價에 따라 동전으로 대신 거들 것
전 110냥 2전

합계 미 200석 1두 6승
1석 12두 4승 산장초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201석 14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544냥 4푼 내
505냥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39냥 4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산수첩

현암 미 39석 6승
40두 4승 산장초에서 가져온다.

합계 미 40석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전 106냥 1전 4푼 내

100냥 본청에 본디 획급한다.
61전 4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산동별

청룡 미 40석 1두 6승
전 109냥 4푼

동북 미 75석 7두 8승
전 205냥 3전 2푼

남부 원천동 미 9석 5두 8승 중영에 바친다.
전 25냥 5전 2푼 중영에 바친다.

합계 미 125석 2승 내에
125석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2승 가획조는 산보별에 내어 준다.

합계 전 339냥 8전 2푼 내
312냥 5전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27냥 3전 8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산장초

산성 미 43석 7두 8승
전 118냥 3전 2푼

추사 미 32석 12두 8승
전 89냥 3전 2푼

남부 상류천 미 7석 3두 8승 중영에 바친다.

		전 19냥 7전 2푼 중영에 바친다.
하류천		미 4석 10두 4승 중영에 바친다.
		전 12냥 7전 6푼 중영에 바친다.
독산동		미 6석 12두 4승 중영에 바친다.
		전 16냥 5전 6푼 중영에 바친다.
합계		미 95석 2두 2승 6두 6승 향수고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95석 8두 8승 내 1석 12두 4승 산무별에 내어 준다. 14두 4승 산수첩에 내어 준다. 92석 12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258냥 6전 8푼 내에 232냥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26냥 6전 8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산보별		
장안		미 66석 2두 전 179냥 8전
수북		미 23석 10두 2승 전 64냥 3전 8푼
남부	산남동	미 6석 2두 8승 전 16냥 8전 2푼
	권선리	미 6석 2두 8승 전 16냥 8전 2푼
합계		미 102석 2두 8승 2승 산동별에서 가져온다.
실 합계		미 102석 3두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합계		전 277냥 8전 2푼 내 255냥 5전 본고에 본디 획급한다. 22냥 3전 2푼 가획조는 향수고에 내어 준다.

1869년(고종 6) 9월 초7일 예조禮曹에게 이문移文한 일이다.

상고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본부 군정은 폐단이 되는 단서가 많아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대원군께서 내린 전교의 뜻으로 동포의 편부를 경내 대소 민인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가 편하고 좋다고 하며, 일절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가좌책에 따라 한데 모아 균등히 분배하여 정식으로 삼았다. 건릉健陵¹⁰ 및 현릉원顯隆園¹¹ 수호군守護軍과 보인保人도 역시 동포를 마련하는 데에 들어가 있으므로 으레 내는 번전番錢¹²은 첨징疊徵해서는 안 되니 장차 동포를 거둔 것 중에서 취하여 급대하여 지급한다고 하므로 이미 번전을 낸 것이 없다면 보군안책保軍案冊¹³은 자체로 논할 것이 없다. 이에 문이文移하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함이 마땅한 일이다.

고종 6년(1869) 10월 초8일 능원재관陵園齋官¹⁴에게 내리는 하체¹⁵

하체를 위한 일이다. 본부의 군정은 폐단이 되는 단서가 많아 크게 경장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원위께서 하교하신 뜻으로 동포의 편부를 경내 대소 민인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가 편하고 좋다고 하며 일절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가좌책에 따라 한데 모아 균등히 분배하여 정식으로 삼았다. 능원소의 수호군과 보군도 역시 동포를 마련하는 데에 들어가 있으므로 으레 내던 번전은 첨징해서는 안 되니, 동포를 거둔 것 가운데 취하여 급대로 지출하되 이미 번전이 없다면 보군안책은 자체로 논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예조에 문의하였다. 지금 도착한 회이回移 내에 능원소의 수호군과 보군은 동포로 거둔 것 중에서 급대로 지출한다고 하였고, 또 이미 편하고 좋다고 하며 일절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의견이 둘로 나뉠 단서는 그다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뜻으로 두 재소齋所에 알려 주어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하체하니 상고하여 시행함이 마땅한 일이다.

甘結本府判官

右甘爲營門莅任之後 細究本府弊癘 則軍政一款 最爲難醫之端 若不大加更張 則小民

10 건릉(健陵) :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의 능이다.

11 현릉원(顯隆園) : 사도세자의 능이다.

12 번전(番錢) : 역을 서는 대신 납부하는 역가이다.

13 보군안책(保軍案冊) : 보군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14 능원재관(陵園齋官) : 현릉원 참봉이다.

15 하체(下帖) : 수령이 관하의 면업, 훈장, 향교의 유생 등에게 유시하는 문서이다. 체문이라고도 한다.

無以聊生 公納無以充補 是豈非切悶者乎 蓋自陞營之初 減斗減額 爲華民軫念之澤 靡不庸極 而法久弊生 奸僞日滋 民納之輕重不均 軍伍之虛疊轉多 不得已有癸亥米錢之均排 丁卯洞案之定給 何莫非隨時制宜 而軍民輩規避之習 愈往愈甚 勢力稍饒者 有丁皆免 貧殘無依者 隨口輒疲 甚至有黃白之冤徵 亦有一室四五丁之疊納者 故華民之移去隣境者 比比有之 在昔全盛之面 今成凋殘之洞 民戶漸至減縮 簽丁隨以紊亂 到今矯揉之策 實爲繼述之政 而苦無良籌是加尼 際伏承大院位教是教意 以洞布之便否 詢問於境內大小民人 則皆曰便好 一無異辭 是可謂大同之論 而況又他道他邑已試之事乎

然而作法非難 守法爲難 今於改張之際 若不十分審核 則易歸於有始無終是如乎 先從家座 屢加爬櫛 假令某洞爲幾戶 則就其中四窮最貧殘外 毋論大戶小戶 通同分排於原捧米錢數爻 使各其洞赴期收納是矣 如是定式之後 若有携貳不納之戶 則是拒逆朝令也 以法從事 斷不饒貸 況此洞布磨鍊 異於簽名軍案 而爲一邑矯弊之政 則大民亦當樂爲之助 乙仍于 茲以發甘爲去乎 以此意消詳曉諭於境內大小民人爲旂 各面各洞米錢應納實數 與應行條例 博採物議 務歸停當 以爲成節目 永久遵行之地 宜當向事

己巳七月日

傳令各面各洞大小民人

向以洞布事奉承大院位教是教意暨營門提飭 詢問便否於各面各洞 輿論僉同 衆情歸一 故大小民戶 及各樣雜頃與冒免者 一竝通同 計戶排定 而應行條件 一一開錄 成節目 出送 依此舉行是矣 大抵近日軍弊 爲小民難支之痼瘼 小民難支 則大民亦何以奠居乎 主一洞之紀綱 爲一洞之依倣者 大民 而一洞之離散蕩析 何忍坐視而不思所以救助之方乎 是以京居卿宰家 或捐幾百兩錢 出給墓村農村 以爲殖利應役之資 卿居士大夫家 或出幾十緡錢 付之本洞本里 以爲存本助役之方 苟皆如是 大民所居之洞 小民有何偏苦難支之弊乎 今此洞布云者 卽是洞中均排之謂 而以其軍米軍錢也 故大民不欲與小民均徵云 此則不然 旣曰 洞布云 則此是洞米洞錢也 何嘗與庖丁應役者 而同謂之軍米軍錢也哉 爲大民之道 固宜顧恤小民 隨力助給 以爲奠保之地 恰是當然底事 何待勸勉而爲之哉 各宜深量另圖 期於共濟 俾有實效是矣 如或不遵令飭 敢有岐貳沮戲之論者 當該民人 卽當報營 嚴治 依律處斷 竝須知悉 宜當向事

己巳七月日

節目

本府軍伍 初無上番之例 只有納米之役 而納米也 有良奴六斗四斗之別 及其陞營時 特爲減額減斗 而其所斗額之減 又以兩湖耗作給代 爲華民軫念之澤 靡不庸極矣 夫何 民心日巧 軍弊滋長 避重就輕 虛疊相仍 不得已有癸亥米錢之均排 丁卯洞案之定給 何莫非隨時制宜 而軍民輩規避之習 愈往愈甚 饒實稍點者 有丁皆免 貧殘無依者 隨口輒徵 甚至有黃口而白骨 朱絲而陳布之冤矣 哀此小民 何以支保 弊到極處 不可不矯革乃已 而苦無良籌 方切憂悶 際伏承大院位教是教意 洞布一款 果是華府最宜之政 依教意 詢問便否 於境內大小民人 則皆曰便好 一無異辭 是可謂大同之論 而況又他道他邑已試之事乎 今於大更張之會 若不十分審核 則易歸於有始無終 故先從家坐 而屢加爬櫛某洞內大戶小戶 期無遺漏一一抄錄 假令一洞爲幾戶 則就其中四窮最貧殘外 毋論大小遂戶 均排於原捧米錢數爻 則每戶米爲三斗二升錢 爲五錢八分是如乎 自今爲始 以此定式 各其洞所納米錢 面任洞長 赴期收納於各該所是矣 如是定式之後 若有携貳不納之戶 則是拒逆朝令也 以法從事 斷不饒貸 況此洞布磨鍊 爲一邑矯弊之政 則大民亦豈不樂爲之助乎 各庫捧下實數 已有前定節目 而分屬面里 及應行諸條 列錄于左爲去乎 依此永久遵行事

己巳七月日

一 各軍丁原額 爲一萬二千八百七十一名 每名米三斗式所捧 合爲二千五百七十四石三斗 錢五錢式所捧 合爲六千四百三十五兩五錢矣 今番境內抄戶原數 合爲一萬三千一百七十四戶內 除其最窮應援之戶 則實戶 合爲一萬二千一百八十二戶 較諸納米之摠 不足爲六百八十九戶是遣 且陵園所保軍二百五十八名 番錢五百十六兩 及興天烽燧保軍一百四名 番米二十石十二斗 番錢五十二兩 不加不給代上下次 通同磨鍊 則每戶米二升錢八分式 加數排比是齊

一 洞布酌定之後 所排米錢 每年自洞中依數收納 則戶數雖有增減 原納不可贏縮 此則惟在本洞之計數排捧 而某樣招集 期有戶多排少之實效是齊

一 士夫家 若以逐年收納爲嫌 則別付錢財於洞中 使之取殖排納 未爲不可 此亦惟在於本戶之量處是齊

一 今此家座遺漏與誤錄 難保必無 則米錢出去之數 與本洞戶摠 或有寡與剩不齊之弊 此則自本洞 只以出去米錢之摠 通同分排 以爲均力之地是齊

一 米錢畢納 依前以十月晦內爲限 而如有過限不納之戶 則面任與洞任 這這告官 以爲捉治督捧之地是齊

一 各洞洞長 以有風力 有根着 勤實可堪者 自洞中收議擇定 以爲望報舉行之地是齊
 一 今此洞布專 爲大小平均戶口增羨之策 故城內食料 三班亦入磨鍊中 而至於精抄軍
 待年軍 則單口居生者 乃是豐役也 此則以他戶中多丁者 移定是齊

各面洞布分劃都摠

需米庫

宗德	米四十六石十四斗 錢一百二十七兩六錢
五朶	米二十八石十二斗 錢七十八兩三錢
宿城	米十九石九斗四升 錢五十三兩三錢六分
貢鄉	米七十八石七斗六升 錢二百十三兩四錢四分
漁灘	米六十六石二斗 錢一百七十九兩八錢
廣德	米六十石八斗八升 錢一百六十四兩七錢二分
鴨汀	米九十石十斗 錢二百四十六兩五錢
葛潭	米四十五石三斗四升 錢一百二十二兩九錢六分
三峯	米六十九石十四斗六升 錢一百九十兩二錢四分
南部	龜川洞 米三十三石四斗二升 錢九十兩四錢八分
	山樓洞 米十七石十三斗八升 錢四十八兩七錢二分
	池洞 米十二石十二斗 錢三十四兩八錢

長芝洞	米七石十斗二升 錢二十兩八錢八分
古等村	米四石八升 錢十一兩二分
梅山洞	米四石十三斗六升 錢十三兩三錢四分
梅香洞	米十八石十一斗六升 錢八兩七錢
南昌洞	米四十五石十三斗 錢一百二十四兩七錢
細洞	米八石一斗六升 錢二十二兩四分
校洞	米三石九斗四升 錢九兩八錢六分
合	米六百六十六石七十斗 本庫原劃 錢千八百十二兩五錢內 一千六百六十六兩五錢 本庫原劃
加	錢一百四十六兩 出給餉需庫
餉需庫	
南面	米八十四石四斗 錢二百二十九兩一錢
龍伏	米四十五石九斗八升 錢一百二十四兩一錢二分
土津	米五十五石十三斗四升 錢一百五十一兩九錢六分
荊石	米四十九石七斗四升 錢一百三十四兩五錢六分
雨井	米九十六石三斗二升 錢二百六十一兩五錢八分

梧井		米五十五石十三斗四升 錢一百五十一兩九錢六分
日用		米三十六石四升 錢九十八兩六錢
南部	支長洞	米六石六斗 錢十七兩二錢
北部	上光教	米七石七斗 錢二十兩三錢
	紙所洞	米三石九斗四升 錢九兩八錢六分
	垆村	米七石三斗八升 錢十九兩七錢二分
	屯村	米六石六斗 錢十七兩四錢
	舊川洞	米一石十三斗八升 錢五兩二錢二分
	花山洞	米一石十三斗八升 錢五兩二錢二分
	長安洞	米十六石十二斗八升 錢四十五兩八錢二分
	普施洞	米三十八石九斗二升 錢一百四兩九錢八分
	北水洞	米十一石七斗八升 錢三十一兩三錢二分
	新豐洞	米三十九石七斗 錢一百七兩三錢
	軍器洞	米十九石三斗 錢五十二兩二錢
	泔里	米一石一斗 錢二兩九錢

合	米五百八十五石五斗八升 九斗二升 守堞廳推來
實合	米五百八十六石內 五斗八升 保餉庫不足條出給 五斗二升 捕廳不足條出給 七斗 西庫不足條出給 十斗 良丁竹不足條出給 六斗 忠翊竹不足條出給 六斗六升 山壯抄不足條出給 二十石十二斗 興天烽燧保軍番米出給 五百五十八石十斗 本庫原劃條 合下 餘 合
	五百八十二石二斗六升 米三十石十二斗四升 鄉校募入番錢條給代次 錢一千五百九十一兩五錢二分 一百四十六兩 需米庫加劃條推來 七十一兩一錢八分 保餉庫加劃條推來 三十三兩六錢二分 捕廳加劃條推來 二十三兩五錢八分 守堞廳加劃條推來 十三兩七錢 西庫加劃條推來 三兩七錢 良丁所加劃條推來 二十二兩七錢 忠翊所加劃條推來 三十九兩四分 山武別加劃條推來 六兩一錢四分 山守堞加劃條推來 二十六兩三錢八分 山東別加劃條推來 二十六兩六錢八分 山壯抄加劃條推來 二十二兩三錢二分 山保別加劃條推來 實合
	錢二千二十六兩五錢六分 五百十六兩 陵園所保軍番錢給代條出給 五十二兩 興天烽保軍番錢給代條出給 一千三百九十六兩五錢 本庫原劃條

合下	錢一千九百六十四兩五錢
餘	錢六十二兩六分 郷校募人番錢條給代次
保餉庫	
南谷	米九十四石四斗四升 錢二百五十六兩三錢六分
台村	米九十石十斗 錢二百四十六兩五錢
晴湖	米四十四石十二斗 錢一百二十二兩八錢
梅谷	米六十六石十二斗六升 錢一百八十二兩五錢四分
南部 南水洞	米三十三石四斗二升 錢九十兩四錢八分
合	米三百二十九石二斗二升 五斗八升 餉需庫推來
實合	米三百三十石三斗 本庫原劃
合	錢八百九十六兩六錢八分內 八百二十五兩五錢 本庫原劃 七十一兩一錢八分 加劃條餉需庫出給
捕廳	
楊澗	米二十九石十三斗 錢八十一兩二錢
浦內	米七十五石四斗六升 錢二百四兩七錢四分
松洞	米五十石二斗 錢一百三十六兩三錢
北部 石山洞	米二石五斗二升 錢六兩三錢八分

合		米一百五十七石九斗八升 五斗二升 餉需庫推來
實合		米一百五十八石 本廳原劃
合		錢四百二十八兩六錢二分內 三百九十五兩 本廳原劃 三十三兩六錢二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守堞廳		
八灘		米一百一石八斗二升內 一百石十四斗 本廳原劃 九斗二升 加劃條餉需庫出給
西庫		錢二百七十六兩八分內 二百五十二兩五錢 本廳原劃 二十三兩五錢八分 加劃條餉需庫出給
文市		米五十八石四升 錢一百五十七兩七錢六分
北部 下光教		米六石六斗 錢十七兩四錢
	高陽洞	米二石十一斗六升 錢七兩五錢四分
合		米六十七石三斗 七斗 餉需庫推來
實合		米六十七石十斗 本庫原劃
合		錢一百八十二兩七錢內 一百六十九兩 本庫原劃 十三兩七錢 加劃條餉需庫出給
良丁所		

北部	驛村	米二十石十斗四升 錢五十六兩二錢六分
	觀吉同	米三十石二斗六升 錢十兩四錢四分
合		米二十四石八斗 十斗餉需庫推來
實合		米二十五石三斗 本所原劃
合		錢六十六兩七錢內 六十三兩 本所原劃 三兩七錢 加劃條餉需庫出給

忠翊所		
正林		米五十石八斗四升 錢一百三十七兩四錢六分
楚坪		米五十三石四十斗六升 錢一百四十六兩七錢四分
合		米一百四石八斗 六斗 餉需庫推來
實合		米一百四石十四斗 本所原劃
合		錢二百八十四兩二錢內 二百六十兩五錢 本所原劃 二十一兩七錢 加劃條餉需庫出給

山武別		
草長		米四十五石九斗八升 錢一百二十四兩一錢二分
床笏		米三十五石九斗四升 錢九十六兩八錢六分
安寧		米七十八石四斗四升 錢二百十二兩八錢六分

佳士三島		米四十石八斗 從時價以錢代捧次 錢一百十兩二錢
合		米二百石一斗六升 一石十二斗四升 山壯抄推來
實合		米二百一石十四斗 本庫原劃
合		錢五百四十四兩四分內 五百五兩 本庫原劃 三十九兩四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山守堞		
玄巖		米三十九石六升 四十斗四升 山壯抄推來
合		米四十石 本廳原劃 錢一百六兩一錢四分內 一百兩 本廳原劃 六十一錢四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山東別		
青龍		米四十石一斗六升 錢一百九兩四分
東北		米七十五石七斗八升 錢二百五兩三錢二分
南部	遠川洞	米九石五斗八升 錢二十五兩五錢二分 納于中營
合		米一百二十五石二升內 一百二十五石 本庫原劃 二升 加劃條山保別出給
合		錢三百三十九兩八錢二分內 三百十二兩五錢 本庫原劃 二十七兩三錢八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山壯抄
 山城 米四十三石七斗八升
 錢一百十八兩三錢二分
 佳士 米三十二石十二斗八升
 錢八十九兩三錢二分
 南部 上柳川 米七石三斗八升 納于中營
 錢十九兩七錢二分 納于中營
 下柳川 米四石十斗四升 納于中營
 錢十二兩七錢六分 納于中營
 禿山洞 米六石十二斗四升 納于中營
 錢十六兩五錢六分 納于中營
 合 米九十五石二斗二升
 六斗六升 餉需庫推米
 實合 米九十五石八斗八升內
 一石十二斗四升 山武別出給
 十四斗四升 山守堞出給
 九十二石十二斗 本庫原劃
 合 錢二百五十八兩六錢八分內
 二百三十二兩 本庫原劃
 二十六兩六錢八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山保別
 長安 米六十六石二斗
 錢一百七十九兩八錢
 水北 米二十三石十斗二升
 錢六十四兩三錢八分
 南部 山南洞 米六石二斗八升
 錢十六兩八錢二分
 勸善里 米六石二斗八升
 錢十六兩八錢二分

合 米一百二石二斗八升
 二升 山東別推來
 實合 米一百二石三斗 本庫原劃
 合 錢二百七十七兩八錢二分內
 二百五十五兩五錢 本庫原劃
 二十二兩三錢二分 加劃條餉需庫出給

己巳九月初七日 文移禮曹

爲相考事 本府軍政爲弊多端 不可不大加更張 而伏承大院位教是教意 以洞布便否詢問於境內 大小民人 則皆曰便好 一無異辭 故一從家座冊 通同均排 著爲定式矣

健陵顯陵園守護軍保軍 亦入於洞布磨鍊中 則例納番錢 不可疊徵 就洞布所捧中給代上下是如乎 既無番錢所納 則保軍案冊 自在勿論乙仍于 茲以文移爲去乎 相考施行爲宜向事

己巳十月初八日 下帖 陵園齋官

爲下帖事 本府軍政爲弊多端 不可不大加更張 而伏承大院位教是教意 以洞布便否詢問於境內大小民人 則皆曰便好 一無異辭 故一從家座冊 通同均排 著爲定式矣 陵園所守護軍保軍 亦入於洞布磨鍊中 則例納番錢 不可疊徵 就洞布所捧中給代上下 而既無番則保軍案冊 自在勿論之意 文移禮曹矣 卽到回移內 陵園所守護軍保軍 洞布所捧中 給代上下亦是置有 亦既是便好 一無異辭 則不必携貳之端是如乎 以此意知委於兩齋所 以爲定式施行亦爲有等以 茲以下帖爲去乎 相考施行宜當向事

화영각면사창신설절목

華營各面社倉新設節目

본부의 판관에게 보내는 감결

이 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곡¹은 법의 뜻이 본래 긴급하고 중대하니 봄에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들이는 것으로 백성이 농사짓는 동안 먹을 양식의 밑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창색²과 술래³들이 이민⁴·이속⁵이라 칭하면서 걸핏하면 제멋대로 써 버리니, 곡식의 품질이 좋지 않고 두곡⁶에는 모자라며 때번 분급할 시기가 되면 민호⁷는 법을 어기고 교묘히 피하기만을 일삼으니 온 경내가 소란스러워 매우 큰 폐단이 아님이 없다. 이것이 어찌 (환곡을) 설치한 본뜻이겠는가? 이미 백성을 위해 설치하였다면 그 요체는 오직 백성을 편하게 하는 데 있다. 옛날의 의창⁸과

- 1 이민(移民)·이속(移粟) : 굶주린 백성을 곡식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곡식을 기근이 든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근대 수해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중앙정부가 실시한 황정(荒政) 즉, 진휼정책의 일환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이속 중심으로 진휼정책을 실시했는데, 특히 영조대 들어서 함경도와 제주도의 진휼을 전담하기 위하여 교계창과 나리포창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각 도에 제민창을 설치하여 곡물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 2 두곡(斗斛) : 곡물의 양을 확인하는 계량기로서 보통 두량(斗量)이라고 한다. 10승(升)은 1두(斗), 10두는 1곡(斛)이 된다. 곡을 세는 계량기를 곡자(斛子)라고 한다. 곡자는 호조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모본으로 하여 건본품을 지방으로 내려 주곤 했는데, 각 지역별과 품목별 곡자의 크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3 의창(義倉) : 봄에 무이자로 민간에 곡물을 대여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나누어 주던 진휼기관이다. 조선 초기에 소규모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의창을 설치하였다. 의창곡은 환곡으로 분급한 양이 무상 분급한 양보다 훨씬 많았다. 나누어 준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평상시에도 환곡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았고, 흉년에는 더욱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곡물이 많았다. 창고에 남아 있는 곡식이 감소하면 군자곡을 의창에 옮겨 보충하곤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에 1461년(세조 7)에 사창(社倉)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사창⁴은 매우 아름다운 법이었다. 지금 그대로 따라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계획에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여 창정⁵에 수납할 필요 없고 각 해당 동리에서 공회⁶의 논의를 따라 사창을 창설하고 별도로 부지런한 사람을 선발하여 이임⁷에 차정하고 수량을 맞춰 받아 둔다. 봄을 기다려 환곡을 분급할 때 해마다 식례로 삼으면 곡식은 농간이 없어지고 대부분 정실할 것이다. 또 창색과 창례⁸로 말하면 생계를 의지할 방법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환곡을) 받아들일 때 색락⁹의 예에 의거하여 마땅함을 헤아려 마련하면 환곡의 폐단 한 건은 아마 바로잡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백성들은 반드시 즐거이 따를 것이다. 장차 각 면의 마을에 효유하여 그 편부와 이해를 널리 물은 후 백성들 바람을 따라 소상히 보고하여 이를 정식으로 하여 시행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8월 일

절목

영구히 준행하기 위한 일이다. 환곡은 법의 뜻이 본래 긴급하고 중대하니 봄에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들이는 것으로 백성이 농사짓는 동안 먹을 양식의 밑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많은 폐단이 거듭 생기고 있다. 백성들이 납부할 때는 곡식이 좋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때번 환곡을 분급할 때 백성은 곡식의 품질이 좋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색락·후출¹⁰ 등 허다한 잡비가 있어 받을 때는 반포¹¹지만, 납부할 때

- 4 사창(社倉) : 주자(朱子)의 사창론(社倉論)에 의거하여 조선시대에 설치된 곡물 창고였다. 국가 또는 지방관, 민간의 유력자에 의해 면리(面里)에 설치되었으며 사창의 곡식은 진휼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래 주자는 이전의 의창을 다듬어서 시행하였는데 주자학을 숭상하던 조선에서는 전기부터 이 제도를 본받으려고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국가정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였다. 국가나 관에서 시행을 중단한 뒤에는 일부 지역에서 사족들이 사창을 시행하였으며 향약이나 계의 형태로 변용하기도 하였다.
- 5 공회(公倉) : 조선 후기 향촌 구성원의 모임을 지칭한다. 민이 모여 있는 형태에 따라 향회·재회·민회·도회·읍회 등으로 불린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회가 구성되었으나, 조선 후기 지방의 면·리까지 중앙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족 중심의 향회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이후 전개된 부세정책의 변화와 관의 편지에 의한 잠세 수취는 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관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형식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때 수령은 기존의 향회를 적절한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자 했다. '대소 민인'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시기 수원부에서는 공회의 참여층이 널리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6 색락(色落) : 지방관이 전결세나 환곡을 징수할 때에 추가로 징수하여 지방 뭍으로 챙기는 것이다. 색락은 곡식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색(看色)과 말질할 때에 남은 것을 말하는 낙정(落庭)을 합한 것이다. 지방 관아에서 곡식을 징수할 때에는 곡품 검사와 말질을 빌미로 색락을 징수하여 지방 뭍으로 챙기고, 서울로의 운반과 보관에 대비한다는 곡상과 가승을 징수하여 호조에서 규정된 액수 이외의 잉여를 확보하는 것은 18세기 들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목민심서』에 따르면 색락, 즉 간색미와 낙정미는 각각 3승과 5승이 법례였지만, 실제 지역과 곡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는 전포포가 되니 이 어찌 환곡을 설치한 본뜻이겠는가? 본부의 환곡은 특별히 모조 耗條⁷를 제거해 주었는데 이는 팔로八路에 없는 오랜 은택이나, 지금에 이르러 도리어 백성의 폐단이 되니 바로잡아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면 원래 환곡을 설치한 뜻을 이어 받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근심하고 번민하며, 마치 좋은 방도가 없을 것 같던 때에 상영⁸의 감척甘飭을 받아 사창 창설의 편부를 전령으로 각 면의 대소 민인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 “편하고 좋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이견도 없으니 대동大同의 논의를 가히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 다른 도와 다른 고을에서 사창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겠느냐. 특별히 대원군께서 내린 뜻을 받들어 의정부에서 여러 도에 문서를 보내어 민정의 이해를 널리 파악하고, 사세의 편부를 상세히 헤아려 몇 년 동안 창설하여 백성들이 실제로 은혜를 입게 하니 수원부가 이 규칙을 준행하면 실로 때에 맞춰 알맞게 대처하는 정사가 될 것이다. 공적인 장소에 저장하여 곡식도 망가지고 백성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적인 장소에 저장하여 곡식도 잘 보관하고 백성도 원하는 것이 진실로 옛날 의창의 아름다운 제도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창을 설치하는 것은 비록 백성의 바람을 따라 즐거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방략을 준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일정한 법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응당 거행할 조건을 영문營門에서 품정⁹하여 이 절목을 만들어 각 창에 나누어 주니 이것에 의거하여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9월 일

1. 면마다 사창 한 곳을 설치하되 반드시 각 동 중 민호가 가장 많고 거리가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정한다. 본면의 곡창을 대략 헤아려 창사倉舍 5~6칸에 한정하여 조성한다.
1. 각 동에서 납부할 곡식을 각각 저장하여 둔 다음에야 비로소 분급할 때 혼잡하고 시끄러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모동某洞의 곡穀이라고 패를 걸고서 나누어 비축한다.
1. 사창을 둔 뒤에는 주관할 사람이 없을 수 없다. 대소 민인이 회동하여 의견을 모아 명망이 높고 위세가 있는 사람 1명을 사수社首로 뽑아 정하고, 근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사직社直으로 뽑아 정하는데 모두 관에 보고하여 첩帖을 내게 한다. 염산斂散과 수직守直의 절차는 한결같이 사수의 지휘에 따라 거행한다.

⁷ 모조(耗條) :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의 이자로 원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⁸ 상영(上營) : 삼군부를 지칭한다. 비변사가 폐지된 이후 수원부의 제정과 군사문제는 주로 삼군부에서 주관하였다.

1. 사창을 만드는 목재는 면의 사양산私養山에서 가져다 쓰는데, 그 들어가는 바를 헤아려 각 산에서 나누어 취하되 한 산에 편중되거나 남벌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역군役軍은 각 동의 환곡을 받은 백성에게 일수日數를 나누어 역에 나아가게 하고 이 달을 기한으로 하여 조성한다.
1. 사창 모양은 토교土窖 모양으로 하고, 가운데는 높은 기둥을 세운다. 기둥에 의지하여 서까래를 걸고 벗짚으로 덮고 담장을 에워싼다. 벽 사이에는 구멍을 두어 풍조風燥⁹를 새게 하고, 위로는 흙을 붙이고 아래로는 엮어 묶어서 물불을 막는다. 반드시 동리洞里 중에서 높고 건조하며 별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한다. 앞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고 자물쇠는 이중으로 하여 창고를 봉한 후 열쇠는 관가에 납부한다.
1.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창고를 여는 날씨는 관령에 따라 거행하고, 매년 10월 안에 납부를 마치는 것을 기한으로 삼는다. 만약에 이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은 백성들은 사수가 지명하여 보고하면, 잡아서 엄하게 다스리는 근거로 삼는다.
1. 곡식의 품질은 피곡皮穀과 정곡正穀을 막론하고 반드시 정실情實한 곡식으로 받고, 받자마자 관청의 뜰에서 바로 곡품을 살핀다. 만약 좋은 곡식이 아닌 것으로 억지로 바치려고 한 자는 관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한다.
1. 거두는 것을 마치고 보고한 후에는 마땅히 관에서 창고를 순찰하거나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농간을 적발한다. 점검할 때 만약 석수石數가 다르고 곡식의 품질이 떨어지면 사수와 사직社直은 마땅히 중물로써 다스린다.
1. 환곡을 분급하는 규정은 해당 면에서 각 동의 대소민호의 빈부貧富를 보고 차등을 두되, 반상班常을 논하지 말고 균분均分하여 한 쪽이 치우치게 많거나 적게 받는 근심이 없도록 한다.
1. 분급할 때도 관령官令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각 동의 환민還民들이 모여서 자물쇠를 열고서 각각 납부할 곡식을 표標에 따라 실어간다.
1. 각 동의 환호성책還戶成冊¹⁰은 한결같이 본동의 가좌에 따라 골라 뽑아 보고한다.
1. 이미 사수와 사직이 있다면 이들이 의지할 밑천이 없을 수 없다. 이는 동중洞中에서 돈과 곡식 간에 마땅함을 헤아려 마련하여 지급한다.

⁹ 풍조(風燥) : 바람이 불어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풍사(風邪)와 조사(燥邪)의 합성으로써 오한과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지만, 땀은 나지 않으며 마른 기침이 나는 증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¹⁰ 환호성책(還戶成冊) : 환곡을 받는 가호(家戶)를 모아 적어 놓은 책이다.

1. 원창原倉의 감색監色, 고자庫子, 감고監考 등이 의지할 조목을 만약 곡식으로 마련하면 이후 난잡한 폐단이 없지 않다. 일동一洞의 환호 수효를 계산하여 매호당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3전씩, 여름에 모맥을 거둘 때 1전씩 두 차례로 나누어 수취하는데 필봉畢捧 보장報狀과 함께 도창都倉에 올려서 식례에 따라 분배하는 바당으로 삼는다.

1. 창고를 순행하며 적간할 때 관원 일행과 감색을 논하지 말고 노자를 스스로 마련하고, 절대 동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비록 술잔과 밥그릇이라도 만약 토색討索하는 자가 있으면 날날이 적발하여 엄히 처벌한다.

1. 두斗·승升·곡穀은 원창에 있는 것으로 모양을 본떠 바로잡아서 각각 만들어 관에서 낙인찍도록 한다.

1. 창고를 만들 때 보태 쓰기 위하여 각 면당 10냥씩 영문營門에서 특별히 획급하고, 자물쇠 2부씩은 본부에서 만들어서 지급하니 이렇게 알고 있으라.

추절목

1. 사수와 사직의 의지할 밀천은 돈과 곡물 간에 각 동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는 뜻으로 처음 절목을 만들었다. 그러나 곡식으로 거두는 것은 난잡한 폐단이 없을 수 없으므로 추색秋色의 낙전落錢 3전 중 10분의 3을 덜어내어 10분의 2는 사수에게 주고 10분의 1은 사직에게 주며, 하색夏色の 낙전 1전 중 10분의 2를 덜어내어 10분의 1은 사수에게 주고 10분의 1은 사직에게 준다. 곡물을 거둔 것은 모두 해당 백성들에게 도로 돌려줄 뜻으로 다시 마련하므로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870년(고종 7) 8월 일

추절목

1. 사수와 사직의 의지할 밀천을 색락전 중에서 나누어 덜어 주는 것은 형편없고 액수가 적어, (사수와 사직의 일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랫동안 준행할 방법인지 근심스럽다. 추색락秋色落 3전 중 10분의 6을 덜어내어 10분의 4는 사수에게 주고, 10분의 2는 사직에게 주며, 여름보리의 색락전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가을과 여름에 거두는 색락전 중에서 감색監色 이하에게 지급하는 수량은 마땅함을 헤아려 마련하고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도창에 비치한다. 앞으로는 한결같이

이 수에 의거하여 분배하되 각 창에 소속되어 있는 면의 색락 조條는 각 창색이 담당하여 내려준다. 만약 기한 안에 바치지 못한 면은 관에 고하여 독촉하여 거두어 조금이라도 거두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환곡을 나누어 주는 호총戶總은 한결같이 1869년(고종 6)의 조적糶糶 호총에 의거하여 6,738호를 영구히 항식으로 정하여 사직, 면임, 동장 등이 멋대로 남겨 두는 폐단을 없게 한다.

甘結本府判官

右甘爲還穀法意本自綦重 春糶秋糶爲民農糧之資 而挽近以來 倉色率隸 謂以移民移粟 動輒挪移 穀品不精 斗斛有縮 每當分給之時 民戶專事規避 一境譁然 便成莫大之痼瘼 是豈設置之本意也哉 既是爲民而設 則其要惟在於便民 而古之義倉社倉 卽莫大之美法 到今依倣不害爲便利之策 自今秋爲始 不必輸納於倉庭是遺 各該洞里從公會議 勘設社倉 另擇勤幹 差定里任 準數捧置 待春還發 年以爲式 則穀無幻弄 舉皆精實 且以倉色倉隸輩言之 亦不可無聊賴之端 此則依捧上時色落例 量宜磨鍊 則還弊一款 庶可矯救 民必樂從是乙喻 將此令辭曉諭於各面坊曲 詢問其便否利害後 從民願 消詳報來 以爲定式 施行之地 宜當向事

己巳八月 日

節目

爲永久遵行事 還穀法意 本自綦重 春糶秋糶 爲民農糧之資 而挽近以來 百弊層生 及其民納也 穀非不精且完 而每當還分之時 則民以穀品之不精不完 舉不願受 未免勒分 且有色落後出等許多雜費 受以半包 納以全斛 是豈爲民設還之本意也哉 本府還穀之特許除耗 卽八路所無之昔年遺澤 而到今反爲民瘼 不思矯革 則有非繼述之義 庸是憂悶 若無良籌是加尼 際蒙上營甘飭 以社倉勘設之便否 傳令詢問於各面大小民人 則皆曰便好 一無異辭 可知其大同之論 況今他道他邑社倉之設始也 特奉大院位教是教意 自政府行會諸道 廣採民情之利病 深商事勢之便否 勘設幾年 民蒙實惠 則華府之遵行此規 實爲隨時制變之政 與其藏於公 而穀不精民不願 毋寧儲於私 而穀且精 民且願 允合於古昔義倉之美制者乎 今此社倉之設造 雖從民願之樂赴 而至若遵守方略 宜有一定之法令 故應行條例 稟定營門 茲成節目 分授各倉爲去乎 依此永久勿替之地 宜當者

己巳九月 日

- 一 每一面設置社倉一處 而必以各洞中民戶取多道里便近處擇定 假量本面之穀摠 限五六間造設是齊
- 一 各洞所納之穀 各其儲置然後 可無分給時混雜紛拏之弊 以某洞之穀懸牌分儲是齊
- 一 既有社倉 則不可無主管之人 大小民人會同收議 以望重有風力一人擇定社首 又以動幹可堪者 擇定社直 并爲報官出帖 而歛散守直之節 一從社首之指揮舉行是齊
- 一 社倉所造材木 取用於面內私養山 而量其所入 分取各山 勿許偏代濫斫是遣 役軍段 以各洞還民 排日赴役 期於此月內造成是齊
- 一 社倉制樣 以土窖爲之 而中立高柱 依柱掛椽 覆以藁草 圍以墻 壁間置通穴 俾洩風燥 上粘仰土下設編結 以防水火 而必於洞里中高燥向陽處設置是遣 前設板門鎖 以兩鑰封倉後開金納于官家是齊
- 一 捧糶時開倉日子 一從官令舉行 而以每年十月內畢捧爲限是矣 若過此限不納之民 則社首指名馳報 以爲捉治嚴督之地是齊
- 一 穀品段 母論皮穀與正穀 必以精實穀捧上 而開捧即時看色穀品於官庭是矣 若以不精穀欲爲勒納者 則報官嚴處是齊
- 一 畢捧報來後 當自官巡倉 或別遣摘奸 而點閱時 若有石數之相左 穀品之僂劣者 則社首社直 當治以重科是齊
- 一 還分之規 自該面視其各洞之大小民戶之貧富 以爲差等 母論班常 叅量均分 俾無偏多偏小之患是齊
- 一 分給時亦依官令舉行 而各洞還民齊會開鑰 各其所納之穀 依標輸去是齊
- 一 各洞還戶成冊 一從本洞家座 抄出修報是齊
- 一 既有社首社直 則不可無聊賴之資 此則自洞中錢與穀間 量宜磨鍊 以給是齊
- 一 原倉監色庫子監考等 聊賴條段 若以穀磨鍊 則不無日後濫雜之弊 計其一洞之還戶數爻 每戶秋穀捧上時錢參錢 夏牟捧上時錢壹錢式 分兩次收聚 並與畢捧報狀 而上送于都倉 以爲依式分排之地是齊
- 一 巡倉摘奸時 母論官行與監色 自持盤纏 切勿貽弊於洞民是矣 雖盃酒器飯 若有討索者 這這摘發嚴處是齊
- 一 升斗斛段 以原倉所在者 依樣較正 各其造成 以爲自官烙印之地 是齊
- 一 造倉時補用次 每面錢十兩式 自營門特爲劃下 鎖金二部式 自本府造給矣 以此知悉是齊

追節目

- 一 社首社直之聊賴之資 錢與穀間 自該洞磨鍊以給之意 初成節目矣 以穀收捧 不無濫雜之弊 故就秋色落錢三錢中 除出三分 以二分付之社首 一分付之社直是遣 夏色落錢一錢中 除出二分 以一分付之社首 一分付之社直 所收穀物 并爲還給於該民之意 更爲磨鍊爲去乎 依此施行是齊

庚午 八月 日

- 一 社首社直之聊賴之資 以色落錢中 分數除給者 太次些略 自多規避 故爲其悠久遵行之方 就秋色落三錢中 除出六分 以四分付之社首 二分付之社直是遣 夏牟色落錢 依前磨鍊施行是齊
- 一 秋夏所捧色落錢中 監色以下派給之數 量宜磨鍊 別成冊子 以置都倉爲去乎 此後段 一依此數分排爲於 各倉屬面色落條 各其倉色次知捧下 而若有愆納之面 則告官督捧 俾無一分未收之弊是齊
- 一 還分戶摠段 一依已已糶糶戶摠以六千七百三十八戶 永爲恒定 俾無社首面任洞長輩任自存板之弊是齊

화영각색군총소폐절목

華營各色軍總蘇弊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각종 군졸의 천전遷轉과 승차陞差는 본래 경영京營의 예가 있다. 문졸門卒과 여사군旅師軍 등도 그 중 하나이므로 처음부터 다르지 않거늘, 본영本營의 사성문四城門 문졸과 여사군 명색名色 이르러서는 이 역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달리 승천陞遷하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그릇된 규례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후로는 칠색七色の 군총軍總 중 꺾액이 발생하는 대로 문졸과 여사군 등으로 하고, 감당하는 것에 따라 승천은 적실하게 채워 넣는다. 각 군총에서 승차한 교열校列을 각 청에서 행례行禮의 수용을 도와 지급하는 것은 두터운 정의이나 만약 잔박殘薄한 부류로서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유례는 일체 그대로 두되, 새로 차정된 군졸의 행례는 각색이 너무 지나치므로 마땅함을 헤아려 삭감하고, 간소함을 따라 규례를 정한 후 후록後錄에 절목을 작성하여 발급하니 영구히 바꾸지 않고 준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69년(고종 6) 9월 일

후록

1. 뇌자색牢子色の 예목전禮木錢¹ 및 지면례전知面禮錢²은 합 5냥 5전이다.

1 예목전(禮木錢) : 조선시대 중앙정부가 인사, 의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의 수령과 변장들에게 거두던 재원을 지칭한다. 예목은 외직 계수, 가자, 임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조와 병조 등을 비롯하여 내삼청, 돈녕부 등 중앙기관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설정된 명목이다. 정규 부세가 아닐뿐더러 백성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폐지되지 못하고 19세기 후반까지 존속하였다.

2 지면례전(知面禮錢) : 면신례(免新禮)의 일종으로 신입 관원이 재직 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소요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1. 순령수색巡令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5냥 5전이다.
1. 취고수색吹鼓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5냥 5전이다.
1. 등룡수색燈籠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3냥 5전이다.
1. 대기수색大旗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3냥 5전이다.
1. 장막수색帳幕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3냥이다.
1. 세악수색細樂手色の 예목전 및 지면례전은 합 3냥 5전이다.

爲成給事 各項軍卒之遷轉陞差 自是京營之例 而門卒與旅師軍等 亦居其一 初無異同 是去乙 至若本營四城門卒及旅師軍名色 一任是役 無他陞遷之舉者 寔是欠例是如乎 自今以往七色軍總中 隨其見闕 以門卒及旅師軍等 從可堪陞實填代爲旃 各軍總之陞差校例也 自各其廳助給行禮之需 非不爲厚誼 而以若殘薄之類 必不免難支之患 此等流例 一切置之是旃 新差軍卒之行禮 名色殆涉濫觸 故量宜減削 從略定規後 後錄成節目 以給爲去乎 永久勿替遵行宜當向事

後

- 一 牢子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伍兩伍錢是齊
- 一 巡令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伍兩伍錢是齊
- 一 吹鼓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伍兩伍錢是齊
- 一 燈籠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參兩伍錢是齊
- 一 大旗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參兩伍錢是齊
- 一 帳幕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參兩是齊
- 一 細樂手色 禮木錢及知面禮錢 合參兩伍錢是齊

화영곡작전신정식절목

華營穀作錢新定式節目

1869년(고종 6) 7월 16일

본영本營의 장계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신의 영營이 관리하는 각 도의 곡작전穀作錢¹은 곧 외당고의 비상 재원으로 특별히 중요하여 설치한 초기에 관하判下한 정식이 해와 별처럼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인差人을 정해 보내 해마다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차인 무리들이 중간에 착복하여 기한 내에 거둘 수 없었습니다. 법의法意를 생각한다면 남김없이 소탕하고 금년 가을부터 차인을 보내지 말고, 서울의 각 영에 상납하는 예에 따라 해도該道에서 색리를 정하여 진성陳省²을 갖추어 매년 12월 안으로 수량을 맞추어 와서 바치게 하고, 관승貫繩³과 태가駄價⁴는 원전原錢에서 전례대로 덜어내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혹 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색리를 신의 영에서 잡아 가두어 매우 독촉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뜻으로 각각의

1 곡작전(穀作錢) : 환곡을 동전으로 바꾸어 운용한 재원을 의미한다.
 2 진성(陳省) : 지방기관이 청원자의 요청 혹은 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부록하여 발급한 뒤 중앙기관에 제출한 문서이다. 진성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각 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물의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공(稅貢) 수량과 납부하는 관사의 이름, 출발 일시, 공리(貢吏)의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올렸다. 그 밖에 노비선상(奴婢選上) 보고서도 진성이라고 하며, 외방에서 취재(取才)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갖추어 관에 진성의 발급을 신청하면 수령이 이를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이조에 이문(移文)하는데 이 역시 진성이라 하였다.
 3 관승(貫繩) : 곡물을 운송할 때 포장하거나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끈을 뜻한다.
 4 태가(駄價) : 우마(牛馬)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1타(駄)는 우마 1마리에 무명 120필을 적재한 양이다. 대동세는 대부분 미(米)로 징수하였으나 현물의 생산지대와 운송거리에 따라 목(木), 포(布), 전(錢)으로 대납하기도 하였다. 미, 포, 전은 우마에 적재되어 육로로 운송되었으므로 별도의 태가가 설정되어야 했다. 태가는 30리를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풍흉에 따라 흉년이면 미 2.5두, 중년이면 3두, 풍년에는 3.5두를 지급하였다.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어 정식을 삼을 작정입니다. 이에 실증에 의거하여 보고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옵소서.

1869년(고종 6) 8월 1일

의정부가 상고相考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하교 중에, 이번 7월 29일 약방에 입진한 대신과 의정부 당상을 인견引見하고, 하직하는 수령들도 함께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었다. “수원유수 이재원李載元의 장계를 보니,⁵ ‘본영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도의 곡작전穀作錢은 바로 외당고의 비상 재원입니다. 그러나 차인差人이 가지고 올라올 때 중간에서 착복하여 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경영京營의 예에 따라 각 도에서 색리를 정하고 진성을 갖추어 매년 12월 안으로 수량에 맞추어 와서 바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가와 잡비雜費는 원전 중에서 덜어내어 지급하고, 혹시 기한이 넘도록 바치지 않으면, 해당 색리를 본영에 잡아다 놓고 엄하게 독촉하는 뜻으로 관문을 발송하여 식례로 정하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차인의 폐단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막중한 공화公貨가 소모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어찌 제도를 설치한 뜻이겠습니까. 이번에 수원유수가 요청한 바는 그 요체를 깊이 얻은 것이니, 모두 장계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께서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으니, 전교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할 일이다.

1869년(고종 6) 8월 20일 각 도에 문서를 발송하다.

상고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의정부의 관문에서, 이번 7월 29일 약방에 입진한 대신과 의정부 당상을 인견하고, 하직하는 수령들도 함께 입시하였다. 영의정 김병학이 아뢰었다. “수원유수 이재원의 장계를 보니, ‘본영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도의 곡작전은 바로 외당고의 비상 재원입니다. 그러나 차인이 가지고 올라올 때 중간에서 착복하여 기한 내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경영의 예에 따라 각 도에서 색리를 정하고 진성을 갖추어 매년 12월 안으로 수량에 맞추어 와서 바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가와 잡비는 원전 중에서 덜어내어 지급하고, 혹시 기한이 넘도록 바치지 않으면, 해당 색리를 본영에 잡아다 놓고 엄하게 독촉하는 뜻으로 관문

5 원문에는 영의정김(領議政金), 수원유수이(水原留守李)라고 성씨만 표기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를 검토한 결과 영의정과 수원유수가 각각 김병학과 이재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승정원일기』 2741책, 고종 6년 7월 29일).

을 발송하여 식례로 정하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차인의 폐단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막중한 공화가 소모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어찌 제도를 설치한 뜻이겠습니까. 이번에 수원유수가 요청한 바는 그 요체를 깊이 얻은 것이니, 모두 장계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께서 “아된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으니, 전교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할 일이라고 하므로 이에 관문을 베껴서 보내니, 귀도貴道에 소재하는 곡작전을 한결같이 정식에 따라 기한 내에 남김없이 운반한다. 절목으로 만들어 먼저 문서를 보내니 증빙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호남전 12,930냥 4전 3푼, 626냥 4전 4푼, 합 13,556냥 8전 7푼

영남전 5,194냥 7푼

해서전 433냥 3전 5푼

관서전 484냥 2푼

호서전 1,000냥

해서전 1,166냥 6전 6푼



己巳 七月 十六日

本營狀啓內 臣營句管各道穀作錢 卽外帑庫封椿者 而所重有別 制置之初 判下定式 炳若日星 故定送差人 使之年例推來矣 挽近差人輩 中間乾沒 未能趨期封入者 言念法意 蕩掃無餘 自今秋爲始 勿送差人 一依京各營上納例 自各該道定色吏 具陳省 每年十二月內 準數來納 而貫繩馱價 以原錢中 依例除給爲白乎矣 或有過限愆納之弊 則當該色吏 自臣營捉囚嚴督 以法從事之意 發關各該道 定式計料爲白乎旡 茲以據實證聞爲白去乎 令廟堂稟處爲白只爲

己巳 八月 初一日

議政府爲相考事 節啓下教 今七月二十九日 藥房入診 大臣政府堂上引見 下直守令 同爲入侍時 領議政金啓 卽見水原留守李狀啓 則本營句管各道穀作錢 卽外帑庫封椿者 而差人推來之際 中間乾沒 未能趨期 從今秋爲始 依京營例 自各該道定色吏 具陳省 每年十二月內 準數來納 而馱價雜費 原錢中除給 或過限不納 則該吏自本營捉囚嚴督之意 發關定式事 請令廟堂稟處矣 差人之弊 由來旡久 而莫重公貨之一任耗縮 是豈制置之義

乎 今此守臣所請 深得其要 並依狀辭許施 俾有成效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 奉審施行向事

己巳 八月二十日 文移各道

爲相考事 節到付議政府關內 節啓下教 今七月二十九日 藥房入診 大臣政府堂上引見 入侍時 領議政金所啓 卽見水原留守狀啓 則本營句管各道穀作錢 卽外帑庫封椿者 而差人推來之際 中間乾沒 未能趨期 從今秋爲始 依京營例 自各該道定色吏 具陳省 每年十二月內 準數來納 而貫繩馱價 原錢中除給 或過限不納 則該吏自本營捉囚嚴督之意 發關定式事 請令廟堂稟處矣 差人之弊 由來旡久 而莫重公貨之一任耗縮 是豈制置之義乎 今此守臣所請 深得其要 並依狀辭許施 俾有成效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 奉審施行亦爲有等以 茲以騰關文移爲去乎 貴道所在穀作錢 一依定式 限月內無遺馱納 而著成節目爲乎旡 先卽回移 以爲憑考之地 爲宜向事

湖南錢 一萬二千九百三十兩四錢三分
又六百二十六兩四錢四分
合錢一萬三千五百五十六兩八錢七分

嶺南錢 五千一百九十四兩七分

海西錢 四百三十三兩三錢五分

關西錢 四百八十四兩二分

湖西錢 一千兩

海西錢 一千一百六十六兩六錢六分



화영본부각포세납신정식절목

華營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작성하여 발급하기 위한 일이다. 연해에 설치한 포浦는 곧 상인들과 재화가 모여드는 곳이고, 물건을 파는 도회都會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모두 응당 납부해야 할 공세公稅가 있고, 이것으로 읍폐邑弊의 보용補用으로 삼는다. 이는 각 도 여러 읍의 통용되는 규례와 관계된 것이다. 본부의 해포처海浦處는 경기와 충청도의 사이에 있어 본래 각 읍에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설치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애초에 세금이 없었음은 미처 겨를이 없던 일에 말미암은 것 같다. 지금 영하營下의 이례吏隸를 보건대 조잔함이 날로 심해지니 바로잡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주인浦主人¹들을 불러들여 우열을 논의하고, 여론을 참조하여 포세浦稅를 새로 정하고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를 만들고자 한다. 내려 주는 수효는 후록에 열거하고, 절목을 만든다. 이에 따라 준수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869년(고종 6) 10월 일

¹ 포주인(浦主人) : 조선 후기 포구를 중심으로 상품유통이 발달하면서 출현한 계층이다. 대체로 포구에서 상품유통에 관계하면서 자생하였다. 또한 선상(船商)에 대해 상품유통을 보조하면서 식사나 술을 접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선상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상품유통을 전관하는 지위로 상승하였다. 포주인은 관권에 의존하면서 이들이 소유한 상고에 대한 지배권, 즉 주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주인권은 독점적 판매권으로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적 권리였으며 매매, 상속, 양도가 자유로운 재산권이였다.

후록

용포주인	문용기	전 125냥
	문봉기	전 125냥
	홍석구	전 125냥
	박순록	전 125냥
신흥포주인	문명석	전 100냥
신성포주인	김성한	전 75냥
빈정포주인	이경신	전 75냥
합		전 750냥
지출		300냥 고마雇馬 ² 30필에 대한 추가 가격

200냥 능원소陵園所의 서원 2인

200냥 칠구창七九倉의 색리 2인

50냥 상영上營의 예방서리 2인

지출 합계 750냥

1. 금년은 식례를 정한 초기에 관계되니 반드시 준봉한 이후에 배용排用할 수 있다. 그러므로 12월에는 수요대로 거두어들여 바로 지출하고, 1870년(고종 7)부터 시작하여 7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절반씩 상납하여 지출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1. 식례를 정한 후에 만약 혹 월당月當을 위반하면 장을 치고 가두어 독봉督捧한다. 이와 같은데도 또 완강히 거부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포주인은 엄형에 처하여 멀리 정배하고, 포소浦所는 바로 속공屬公한다.
1. 각 포주인이 새로 정한 세납을 빙자하여, 선상船商에게 구문口文을 봉입할 때 만약 돈을 나누어 주어 더 거두는 단서가 있으면 해당 포주인은 엄형에 처하여 멀리 정배한다.
1. 월당은 비록 7월과 12월 나누어 작성했을지라도, 지출은 12월 준봉하기를 기다린 뒤에 한다.

² 고마(雇馬) : 지방기관에서 민간의 말을 값을 주고 부리는 일을 지칭한다. 조선 초기 지방관청은 사신의 왕래, 수령의 교체, 향리의 출장, 세금의 운송 등에 필요한 말과 마부를 역인(驛人)이나 관속(官屬)에게 '입마역(立馬役)'이라는 명목으로 부담시켰다. 그러다 입마역은 중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쇄마역(刷馬役)'이라고 하여 민역의 일환이 되었다. 쇄마역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고을의 등급과 도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일정액이 책정되어 값을 주고 빌려 쓰는 형태, 즉 고마(雇馬)로 전환되었다. 이에 지방기관은 고마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마고(雇馬庫)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爲成給事 沿海設浦 卽商貨湊集之地 興販都會之處也 故皆有公稅之應納 以爲邑弊之補用 係是各道列邑之通規 是在如中 本府海浦處在畿湖之交 素所有名於各邑 而設始多年 初無應稅 似緣未遑之事矣 見今營下吏隸 凋殘日甚 有不得不矯揉者 故招致浦主人等 爛商其優劣 參互其物議 新定浦稅 俾作補弊之方 捧下數爻 後錄條列 著成節目 依此恪遵 永久勿替 宜當向事

己巳十月 日

後

襄浦主人	文龍基	錢壹百貳拾伍兩
	文鳳基	錢壹百貳拾伍兩
	洪錫九	錢壹百貳拾伍兩
	朴順祿	錢壹百貳拾伍兩
新興浦主人	文命錫	錢壹百兩
新星浦主人	金性漢	錢柒拾伍兩
濱汀浦主人	李敬信	錢柒拾伍兩
合		錢柒百伍拾兩
下		參百兩 雇馬三十四匹添價
		貳百兩 陵園所書員二人
		貳百兩 七九倉色吏二人
		伍拾兩 上營禮房書吏二人
合下		柒百伍拾兩

- 一 今年段 係是定式之初 而不得不準捧 然後可以排用 故十二月依數捧入 卽爲上下 是在果 自庚午爲始 七月臘月分兩等 折半式納上 以爲上下之地事
- 一 定式之後 若或有違越月當 則杖囚督捧是矣 如是而又有頑拒之弊 則當該浦主人 嚴刑遠配 浦所卽爲屬公事
- 一 各浦主人藉托於新定稅納 而船商處口文捧入之時 若有分錢加捧之端 則當該浦主人 嚴刑遠配事
- 一 月當雖以七臘分等酌定 至若上下 則待臘月準捧後爲之事



華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新定式

節目

大臣政府堂上引見下直守令同為入侍時領議政金 所
 啓即見水原留守李 狀 啓則本營勾管各道較作錢
 卽外幣庫封樁者而差入推來之際中間乾沒未能越期從
 今秋為始依京營例自各該道定色吏具陳省每年十二月
 內準數來納而賦價雜費原錢中除給或過限不納則該吏
 自本營提因嚴督之意發關定式事請令廟堂稟慶矣差
 人之獎由來既久而莫重公貨之一任耗縮是宜制置之義
 乎今此守臣所請深得其要並依狀辭許施俾有成效之地
 何如
 上曰依為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向事
 己巳八月二十日文移各道
 為相考事節到付 議政府閣內節 啓下教令七月二十
 九日藥房入診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

所啓卽見水原留守狀 啓則本營勾管各道較作錢卽
 外幣庫封樁者而差入推來之際中間乾沒未能越期從
 今秋為始依京營例自各該道定色吏具陳省每年十二
 月內準數來納而賦價雜費原錢中除給或過限不納則
 該吏自本營提因嚴督之意發關定式事請令廟堂
 稟慶矣差人之獎由來既久而莫重公貨之一任耗縮是宜
 制置之義乎今此守臣所請深得其要並依狀辭許施俾
 有成效之地何如
 上曰依為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亦高
 有著以茲以騰閣文移為去牙 貴道可在較作錢
 一依定式限月內無遺賦納而著成節日為牙 茲
 先卽回移以為憑考之地為宜向事
 湖南錢一萬二千九百三十四文三分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又六百二十六兩四錢四分
 合錢一萬三千五百五十六兩八錢七分
 嶺南錢五千一百九十四兩七分
 海西錢四百三十三兩三錢五分
 關西錢四百八十四兩二分
 湖西錢一千兩
 海西錢一千一百六十六兩六錢六分

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為成給事沿海設浦卽商貨聚集之地與販都會之處也故當有
 公稅之應納以為邑榮之稱用係是各道列邑之通規是在如中本府
 海浦處在畿湖之文素所有名於各邑而設始多年初無應稅似緣
 未遑之事矣見今營十吏課調殘日甚有不得不為據者故拾致浦
 主人等爛商其優劣參互其物議新定浦稅俾作補弊之方據下數
 文後錄條列著成節目依此格遵永久勿替宜當四事
 己巳十月 日
 後
 龍浦主人文龍基錢壹百貳拾伍兩
 文鳳基錢壹百貳拾伍兩
 洪錫九錢壹百貳拾伍兩
 朴順祿錢壹百貳拾伍兩

新興浦主人文命錫錢壹百兩
 新羅浦主人金性漢錢拾伍兩
 濱汀浦主人李敬信錢拾伍兩
 合錢柒百伍拾兩
 下參百兩 崔馬三千匹添價
 貳百兩 陵園邱書貳八
 貳百兩 七九倉色吏二人
 伍拾兩 上營糧房書吏二人
 合下柒百伍拾兩
 今年改係是定式之初而不得不得排用故十月依數
 擇入卽為上下是在果自庚午為始七月臘月分兩等折半式納
 上以為上下之地事
 一定式之後若或有違越月當則杖囚督擇是矣如是而又有頑拒

一各浦主人籍托於新定稅納而船商處口又擇令時若有分錢加係
 之端則當按浦主人嚴刑逐配事
 一月當雖以七臘分等酌之至若上下則待臘月準後為之事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大 院位教是 教意自 政府訂會諸道廣採民情之利病深
商事勢之便否初設幾年內蒙實 惠則華府之遵行此
規實為隨時制變之故其賦於公而教不精民不願毋寧
儲於私而教且精民且願允合於古昔義倉之美制者乎今
此社倉之設造雖說民願之樂赴而至若遵守方畧宜有一
定之法令故應行條例東定 營門華成即日分撥各居為去
乎依此永久勿替之地宜當者

己巳九月 日

- 一 每一面設置社倉一處而必以各洞中民戶家多道里便近選擇
- 一 定置量亦由之教提限五六間造設是齊
- 一 各洞所納之穀各其備置然後可無分給時況雜給予之弊以
- 一 某洞之穀懸牌分儲是齊
- 一 既有社倉則不可無去管之人大小民人會同收議以望重有

風力一擇定社首又以動靜可堪者擇定社直并為報官
出帖而欲散守直之節一從社首之指揮舉行是齊

一 社倉所造材木取用於洞內私義山而量其形入分取各山包
許備代濫斫是遵後軍段以各洞選民排日赴後期於此月
內造成是齊

一 社倉制排以土窖為之而中立高柱柱掛梯巖以葦草圍
以墻壁間置通穴俾風燥上指仰土下設漏法以防水火
而必於洞中最高燥向陽處設置是遵前設校門頭以兩
鑰封倉後開金納于官家是齊

一 擇雜時間倉日子一從官令奉行而以五年十月內早抹為限
是矣若過此限不納之民則社首指名報以治治嚴督之
地是齊

一 穀而段每論皮穀共正教必以精實教棒上而開抹即時看

令付之社直所收穀物并為運給於該民之意更高唐缺而去手依此說
行是齊

庚午八月 日建節日

一 社首社直即賴之資以色落錢中分數除給者太次些略自多親選故
為其德久遵守之方乾秋色落錢中除出六分以四分付之社首二分
付之社直是遵夏年色落錢依前唐缺施行是齊

一 秋夏兩擇色落錢中黃色以下派給之數宜宜唐缺別民冊予以置齊
倉為去守此後段一依此數分排而務各倉屬面色落錢各其倉色以
知抹下而若有懸納之面則告官督擇俾無一分未收之弊是齊、
一 遵令戶總段一依已已耀耀戶總以六千七百三十八戶承為順定俾無
社首而任洞長華任自存板之弊是齊

各色軍器檢舉昨日

為成給事各項軍器之選轉理自是京營之例而兩軍與旅帥軍等亦居其
一 初無異同是去己至若本營四城門軍及旅帥軍各色一任是後無他理選
之舉者是矣例是如自今以往七色軍器中隨其見聞以兩軍及旅帥軍
等從可理實填代為各軍總之陸差校列也自各其應助給行禮之需非
不為厚誼而以若殘薄之類必不免難支之患此等況例一切置之是亦新差
軍年之行禮名色殆涉濫餉故宜減削從略定規後錄成即日以給去
手承久勿替遵行宜當而事

後

己巳九月 日

- 一 軍子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 一 巡令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 一 吹鼓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色教品於官庭是矣若不精教欲為勸納者則報官嚴查
是齊

一 單捧報來後當自官巡倉或刑選摘奸而照閱時若有
后數之相左教品之危劣者則社首社直當治以重料是齊
一 選分之親自視其各洞之大小民戶之貧富以為差等毋
論班常參量均分俾無偏多偏少之患是齊

一 分給時亦依官令舉行而各洞選民齊會開鑰各其所納之
穀依標輸去是齊

一 各洞選戶成冊一從本洞家產抄出修報是齊

一 既有社首社直則不可無聊賴之資此則自洞中錢共教開
量宜唐錄以給是齊

一 原倉藍色庫子監考等聊賴降段若以教唐錄則不無
日後濫雜之弊計其一洞之選戶數天每戶秋穀抹上時錢

冬夏夏年抹上時錢唐式式分兩次收聚並共單捧報
狀而上送于都倉以為依式分排之地是齊

一 巡倉摘奸時毋論官行其藍色自持盤纏切勿貽誤於
洞民是矣雖至酒器飯若有討索者違違摘黃嚴處是
齊

一 升斗斛段以原倉所在者依樣較正各其造成以為自官
烙印之地是齊

一 造倉時補用次面錢十兩式自 營門特為劃下額金二
部式自本府造給矣以此知甚是齊

建節日

- 一 燈籠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 一 大旗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 一 帳幕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 一 綳樂手色禮木錢及知面禮錢合伍兩伍是齊

教作錢新定式節目

己巳七月十六日

本營狀 啓內臣營勾管各道教作錢即外第庫封格者而
所重有別制置之初 判下定式炳若日星故定送差入使之
年例推來矣挽近差入輩中間乾沒未能趁期封入者言念
法意蕩掃無餘自今秋為始勿送差入一依京各營上納例
自各該道定色吏具陳省每年十二月內準數來納而實繩
欺價以原錢中依例除給為白牙矣或有過限德納之弊則
當該色吏自官營捉因嚴督以法從事之意發關各該道定
式計料為白牙茲茲以據實登聞為白去手 令廟堂
稟慶高白只為

己巳八月初一日

議政府為相考事節 啓下教今七月二十九日藥房入 診

十四斗四升 山社推米
合米四十石 本庫原割
錢一百六兩一錢四分內
一百兩 本庫原割
六兩一錢四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山東別
青龍米四石一斗六升
錢一百九兩四分
東北米七十五石七斗八升
錢二百五兩三錢二分
南新遠川洞米九石五斗八升
錢二十五兩五錢二分
合米一百二十五石二升內
納于中營

一百二十五石 本庫原割
二升 加割條山保別出給
合錢三百三十九兩八錢八分內
三百十二兩五錢 本庫原割
二十七兩三錢八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山社別
山城米四十三石七斗八升
錢一百十八兩三錢二分
佳士米三十二石二斗八升
錢八十九兩三錢二分
南新上柳川米七石三斗八升
錢十九兩七錢二分
下柳川米四石十斗四升
納于中營

二十二兩三錢二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已巳九月初七日 文務禮官
為相考事本府軍政為獎多端不可不大加更張而伏承
大院位教是 教意以洞布便否詢問於境內大小民人則皆曰便好
一無異辭故一從家座毋通同均排著為定式矣
健陵
顯隆園守護軍保軍亦入於洞布廢錄中則例餉者錢不可盡
徵就洞布所捧中給代上下是如乎既無着錢則保軍案
毋自在勿論乙仍于茲以文移為去才相考施行為宜向事
已巳十月初八日下帖 陵園齋官
為下帖事本府軍政為獎多端不可不大加更張而伏承
大院位教是 教意以洞布便否詢問於境內大小民人則皆曰便
好一無異辭故一從家座毋通同均排著為定式矣

陵園所守護軍保軍亦入於洞布廢錄中則例餉者錢不可
可盡徵就洞布所捧中給代上下而既無着錢則保軍案毋
自在勿論之意文移禮曹矣即到回移內 陵園所守護軍
保軍洞布所捧中給代上下亦是置有亦既便好一無異辭
則不必再貳之端是如乎此意知委於兩齋所以為定式施行
亦為有等以茲以下帖為去才相考施行宜向事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錢十二兩七錢六分
禿山洞米六石十二斗四升
錢十八兩五錢六分
合米九十五石二斗二升
六斗六升 餉需庫推米
實合米九十五石八斗八升內
一石十二斗四升 山武別出給
十四斗四升 山守塚出給
九十二石十二斗 本庫原割
合錢二百五十八兩六錢八分內
二百三十五兩 本庫原割
二十六兩六錢八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山保別

長安米六十六石二斗
錢一百七十九兩八錢
水北米二十三石十斗二升
錢六十四兩三錢八分
南新山南洞米六石二斗八升
錢十六兩八錢二分
勸善里米六石二斗八升
錢十六兩八錢二分
合米一百一十二石二斗八升
二升 山東別推米
實合米一百一十二石三斗 本庫原割
合錢二百七十七兩八錢二分內
二百五十五兩五錢 本庫原割
納于中營

各面社倉新設節目
甘結本府判官
右甘為遷教法意本自恭重春糶秋糶為民農糧之
資而挽近以來倉色卑隸謂以移民務東動輒挪移
穀品不精斗斛有偏每當分給之時民戶專事規避一
境詳然便成莫大之痼疾是豈設置之本意也哉既
是為民而設則其要惟在於便民而古之義倉社倉即
莫大之良法到今依倣不害為便利之策自今秋為始不
必輸納於倉庭是違各該洞里從公會議設社倉另擇
勤幹差定里任準數擇置待春還糶年以為式則穀無
幻美舉時精實且以倉色倉隸單言之亦不可無聊賴之
端此則依捧上時色落例宜廢錄則還獎一歎庶可編
揀民必樂從是乙喻將此令辭曉諭於各面坊由詢問其

便否利害後從民願消詳報來以為定式施行之地宜當
向事
節目
已巳八月日
為永久遵行事遷教法意本自恭重春糶秋糶為民農糧
之資而挽近以來倉色卑隸謂以移民務東動輒挪移
之資而挽近以來倉色卑隸謂以移民務東動輒挪移
每當分給之時則民以穀品之不精不完舉不願受未克
分且有色落後出等許多難費受以半包納以全解是宜
為民設之本意也哉本府遂教之特許除耗即八路而無
之昔年 遺澤而到今及為民瘼不思鳩率則有非編述
之義膺是履問若無良善是加厄除蒙 上營甘飭以社
倉拘設之便否傳令詢問於各面大小民人則皆曰便好無異
辭可知其大同之論況他道他邑社倉之設始也特奉

良丁所
 北部驛村米二十五石四斗四分
 錢五十六兩二錢六分
 觀吉洞米三石十二斗六升
 錢十四兩四錢四分
 合米二十四石八斗
 十斗 餉需庫推米
 實合米二十五石三斗 本所原創
 合錢六十六兩七錢內
 六十三兩 本所原創
 三兩七錢 加割條餉需庫出給
 忠湖所
 正林米五十石八斗四升

西庫
 文市米五十八石四升
 錢一百五十七兩七錢六分
 北部下光教米六石六斗
 錢十七兩四錢
 高陽洞米二石十一斗六升
 錢七兩五錢四分
 合米六十七石三斗
 七斗 餉需庫推米
 實合米六十七石十斗 本庫原創
 合錢一百八十二兩七錢內
 一百六十兩 本所原創
 十三兩七錢 加割條餉需庫出給

保餉庫
 南谷米九十四石四斗四分
 錢二百五十六兩三錢六分
 台村米九十石十斗
 錢二百四十六兩五錢
 晴湖米四十四石十二斗
 錢一百二十一兩八錢
 梅谷米六十六石十二斗六升
 錢一百八十一兩五錢四分
 南部南水洞米三十三石四斗二升
 錢九十四兩四錢八分
 合米三百二十九石十二斗二升
 五斗八升 餉需庫推米

三兩七錢 良丁所加割條推米
 二十一兩七錢 忠湖所加割條推米
 三十九兩四分 山武別加割條推米
 六兩一錢四分 山守塚加割條推米
 二十七兩三錢八分 山東別加割條推米
 二十六兩六錢八分 山莊抄加割條推米
 二十二兩三錢二分 山保別加割條推米
 實合錢二千二十六兩五錢六分
 五百十六兩 陵園所保軍需錢給代條出給
 五十二兩 興天烽燧保軍需錢給代條出給
 一千三百九十六兩五錢 本庫原創條
 合下錢一千九百六十四兩五錢
 餘錢六十二兩六分 郵校募入番錢條給代次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錢九十六兩八錢六分
 安寧米七十八石四斗四升
 錢二百二十二兩八錢六分
 桂士三喜米四十五石八斗 從時價以錢代條次
 錢一百十兩二錢
 合米二百石一斗六升
 一石十二斗四升 山莊抄推米
 實合米二百一十四斗 本庫原創
 合錢五百四十四兩四分內
 五百五兩 本庫原創
 三十九兩四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山守塚
 玄藏米三十九石六升

錢一百三十七兩四錢六分
 楚坪米五十三石四斗六升
 錢一百四十六兩七錢四分
 合米一百四石八斗
 六斗 餉需庫推米
 實合米一百四十四斗 本所原創
 合錢二百八十四兩二錢內
 二百六十二兩五錢 本所原創
 二十一兩七錢 加割條餉需庫出給
 山武別
 草長米四十五石九斗八升
 錢一百二十四兩一錢二分
 床勞米三十五石九斗四升

合米一百五十七石九斗八升
 五斗二升 餉需庫推米
 實合米一百五十八石 本庫原創
 合錢四百二十八兩六錢二分內
 三百九十五兩 本庫原創
 三十三兩六錢二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守塚廳
 八灘米一百一石八斗二升內
 一百石十四斗 本庫原創
 九斗二升 加割條餉需庫出給
 錢二百七十六兩八分內
 二百五十二兩五錢 本庫原創
 二十三兩五錢八分 加割條餉需庫出給

實合米三百三十石三斗 本庫原創
 合錢八百九十六兩六錢八分內
 八百二十五兩五錢 本庫原創
 七十一兩一錢八分 加割條餉需庫出給
 捕廳
 楊湖米二十九石十三斗
 錢八十一兩二錢
 浦內米七十五石四斗六升
 錢二百四兩七錢四分
 松洞米五十石二斗
 錢一百三十六兩三錢
 北部石山洞米二石五斗二升
 錢六兩三錢八分

宗德米四十六石十四斗
 錢一百二十七兩六錢
 五采米二十八石十二斗
 錢七十八兩三錢
 宿城米十九石九斗四升
 錢五十三兩三錢六分
 貢鄉米七十八石七斗六升
 錢二百十三兩四錢四分
 漁灘米六十六石二斗
 錢一百七十九兩八錢
 廣德米六十八石八斗
 錢一百六十四兩七錢二分
 鴨汀米九十石十斗

錢二百四十六兩五錢
 葛潭米四十五石三斗四升
 錢一百二十二兩九錢六分
 三峯米六十九石十四斗六升
 錢一百九十二兩四錢四分
 南部龜川洞米三十三石四斗二升
 錢九十兩四錢八分
 山樓洞米十七石十三斗八升
 錢四十八兩七錢二分
 池洞米十二石十二斗
 錢三十四兩八錢
 長芝洞米七十石十斗二升
 錢二十兩八錢八分

錢一百三十四兩五錢六分
 兩并米九十六石三斗二升
 錢二百六十一兩五錢八分
 梧井米五十五石十三斗四升
 錢一百五十一兩九錢六分
 日用米三十六石四斗
 錢九十八兩六錢
 南部支長洞米六石六斗
 錢十七兩四錢
 北部上光教米七石七斗
 錢二十兩三錢
 絨府洞米三石九斗四升
 錢九兩八錢六分

洞村米七石三斗八升
 錢十九兩七錢二分
 屯村米六石六斗
 錢十七兩四錢
 舊川洞米一石十三斗八升
 錢五兩二錢二分
 花山洞米一石十三斗八升
 錢五兩二錢二分
 長安洞米十六石十二斗八升
 錢四十五兩八錢二分
 普施洞米三十八石九斗二升
 錢一百四兩九錢八分
 北水洞米十一石七斗八升

古峯村米四石八升
 錢十一兩二分
 梅山洞米四石十三斗六升
 錢十三兩三錢四分
 梅香洞米十八石十一斗六升
 錢五十一兩四分
 香木洞米三石三斗
 錢八兩七錢
 南昌洞米四十五石十三斗
 錢一百二十四兩七錢
 細洞米八石一斗六升
 錢二十二兩四分
 校洞米三石九斗四升

錢九兩八錢六分
 合米六百六十六石十斗 本庫原割
 錢一千八百二十二兩五錢內
 一千六百六十六兩五錢 本庫原割
 加錢一百四十六兩 出給餉需庫
 餉需庫
 南面米八十四石四斗
 錢二百二十九兩一錢
 龍杖米四十五石九斗八升
 錢一百二十四兩一錢二分
 土津米五十五石十三斗四升
 錢一百五十一兩九錢六分
 荊石米四十九石七斗四升

錢三十一兩三錢二分
 新豐洞米三十九石七斗
 錢一百七兩三錢
 軍器洞米十九石三斗
 錢五十二兩二錢
 泮里米一石一斗
 錢二兩九錢
 合米五百八十五石五斗八升
 九斗二升 守塚廳推米
 實合米五百八十六石內
 五斗八升 保餉庫不足條出給
 五斗二升 捕廳不足條出給
 七斗 西庫不足條出給

十斗 良丁所不足條出給
 六斗 忠昭所不足條出給
 六斗六升 山社抄不足條出給
 二十五石十二斗 與天塔遊保軍書米出給
 五百五十八石十斗 本庫原割條
 合下五百八十二石二斗六升
 餘米三石十二斗四升 柳枝募入番錢條給代次
 合錢一千五百九十一兩五錢二分
 一百四十六兩、需米庫加割條推米
 七十一兩一錢八分 保餉庫加割條推米
 三十三兩六錢二分 捕廳加割條推米
 二十三兩五錢八分 守塚廳加割條推米
 十三兩七錢 西庫加割條推米

時以能書可合者幾人會議呼空圍點從多差給中僕段作
為房庫付之於 陵所書負之下內工房之上恐令事宜是
如乙仍于茲成節日為去乎以此格遵承久勿替宜當向事
庚午十二月二十日

各面軍政洞布節目

甘結本府判官

右甘為營門控任之後細究本府弊廢則軍政一款最為難醫
之端若不大加更張則小民無以聊生公約無以充補是宜非
切問者乎蓋自陞營之初減斗減額為華民軫念之 澤靡不
痛極而法久弊生奸偽日滋民納之輕重不均軍伍之虛實野
多不得已有癸亥米錢之均排丁卯洞案之定給何其非隨時
制宜而軍民革規避之習愈往愈甚勢力稍銳者有丁皆免貧
殘無依者隨口輒范甚至有黃白之完徵亦有一室四五丁之
疊納者故華民之移去隣境者比比有之在昔全盛之而今成
凋殘之洞民戶漸至減縮簽丁隨以紊亂到今搗掠之策實為
繼述之政而若無良善是加厄際伏承

大院位教是教意以洞布之便否詢問於境內大小民人則皆曰

量另圖期於共濟俾有實效是矣如或不遵令飭敢有歧或沮
戲之論者當被民人即當報警嚴治依律處斬並須知悉宜當
向事

節目

本府軍伍初無上者之例只有納米之役而納米也有良奴六
斗四斗之別及其陞營時 特為減額減斗而其所斗額之減
又以向湖耗作給代為華民軫念之 澤靡不痛極矣夫何民
心日巧軍獎滋長避重就輕虛費相仍不得已有癸亥米錢之
均排丁卯洞案之定給何其非隨時制宜而軍民革規避之習
愈往愈甚就實稍弱者有丁皆免貧殘無依者隨口輒徵甚至
有黃口而白骨朱絲而陳布之完矣策此小民何以支保獎到
極處不可不檢單乃已而若無良善是加厄際伏承

己巳七月 日

大院位教是教意洞布一款果是華府最宜之政依 教意詢問

便否於境內大小民人則皆曰便好一無異辭是可謂大同之
論而况又他道他邑已試之事乎今於大更張之會若不十分
審核則易歸於有始無終故先從家產而履加爬梯某洞內大
戶小戶期無遺漏一一抄錄假令一洞為幾戶則就其中四窮
最貧貧外母論大小逐戶均排於原採米錢數又則每戶米為
三斗二升錢為五錢八分是如乎自今為始以此定式各其洞
所納米錢面任洞長趨期收納於各該洞是矣如是定式之後
若有携貳不納之戶則是拒逆 朝令也以法從事斷不饒貸
况此洞布廢錄為一邑矯弊之政則大民亦豈不樂為之助乎
各庫捧下實數已有前定節目而分屬面里及應行諸條列錄
于左為去乎依此永久遵行事

己巳七月 日

便好一無異辭是可謂大同之論而况又他道他邑已試之事
乎然而作法非難守法為難今於改張之際若不十分審核則
易歸於有始無終是如乎先從家產履加爬梯假令某洞為幾
戶則就其中四窮最貧貧外母論大小逐戶均排於原採
米錢數又使各其洞趨期收納是矣如是定式之後若有携貳
不納之戶則是拒逆 朝令也以法從事斷不饒貸况此洞布
廢錄異於簽名軍案而為一邑矯弊之政則大民亦當樂為之
助已仍于茲成節日為去乎以此意消詳曉諭於境內大小民
人為各面各洞米錢應納實數與應行條列博採物議務歸
停當以為成節目永久遵行之地宜當向事

傳令各面各洞大小民人

己巳七月 日

大院位教是教意營門提飭詢問便否於各面各洞與論會同

眾情歸一故大小民戶及各樣雜項與冒免者一並同計戶
排定而應行條件一一開錄成節目出送依此舉行是矣大抵
近日軍獎為小民難支之痼疾小民難支則大民亦何以奠居
乎主一洞之紀綱為一洞之依做者大民而一洞之離散高析
何忍坐視而不思所以救助之方乎是以京居卿宰家或指費
百兩錢出給養村農村以為殖利應復之資鄉居士大夫家或出幾
十緡錢付之本洞本里以為存本助役之方苟皆如是大民所
居之洞小民有何偏苦難支之弊乎今此洞布云者即是洞中
均排之謂而以其軍米軍錢也故大民不欲與小民均徵云此
則不然既曰洞布云則此是洞米洞錢也何嘗與庖丁應役者
而同謂之軍米軍錢也哉為大民之道固宜顧恤小民隨力助
給以為真保之地恰是當然底事何待勸勉而為之哉各宜深

陵園所保軍二百五十八名著錢五百十六兩及與天烽燧保軍

一各軍丁原額為一萬二千八百七十一名每名米三斗式所
抹合為二千五百七十四石三斗錢五錢式所抹合為六千
四百三十五兩五錢矣今番境內抄戶原數合為一萬三千
一百七十四戶內除其最窮應拔之戶則實戶合為一萬二
千一百八十二戶較諸納米之撥不足為六百八十九戶是
遺且

排納米為不可此亦惟在於本戶之量度是齊

一今此家產遺漏與誤錄難保必無則米錢出去之數與本洞
戶搃或有寡與剩不齊之弊此則自本洞只以出去米錢之
搃通同分排以為均力之地是齊
一米錢單納依前以十月時內為限而如有過限不納之戶則
面任與洞任這這告官以為捉治督捧之地是齊
一各洞洞長以有風力有根着勤實可堪者自洞中收議擇定
以為望報舉行之地是齊
一今此洞布專為大小平均戶口增美之策故城內食料三班
亦入廢錄中而至於精抄軍待年軍則單戶居生者乃是疊役
也此則以他戶中多丁者移定是齊
各面洞布分劃都搃
需米庫

廳直廳抹獎節目

為成給事本營制置小單舉與京司互相表裏凡百儀操可以比觀矣挽近以來法久弊生凋殘莫甚故隨其痛癢可以矯揉者矯揉可以更張者更張多般講究是在果其中廳直額為五十亦一成廳者也最近任使與他迥殊而近日事觀之則重大行次一年幾次陪行出帖專當舉行跋涉往來且無路需之磨鍊未免德茶呼飢之境其所宿路且置昌投為甚乙仍子錢壹百兩自營門持為別下而與守之方常患鮮克有終博詢採議出給府底各屋人使之取殖每年以利條參拾貳式酌定歲入遠近出帖時馬背也路需也計其程道及日字量宜上下就其年用下如有幾許餘存則添付殖利俾有終始實效之意後錄定規成給節目而去手恪勤遵守求久母督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後
一出站時路需則每十里壹貳馬背則每十里貳貳式磨鍊幸是齊
一印陪出帖則騎馬例自雇馬廐今出給者也此則依前下而路需餘計程上下是齊
一路需馬背推求于歷人處時營府首廳直六人聯名成標俾無中間虛實相蒙之弊是齊
一每年年終首廳直六人齊往歷人處考準標蹟除其用下會計餘數添付歷人使之殖利俾杜虛錄之弊是齊
一隨其上下與會在成一冊子一覽錄以為後考之地是齊
一各歷人中擇定技一人捧下等節使之專管舉行是齊
一未盡條件並後磨鍊是齊
一歷人梁尚根錢貳拾兩
保金性法

後

一重來之人自入役月至搜房月未滿十朔則勿許參窠事
一既定十朔之限則不可不確定月當矣搜房每以十月為定則重來之人自正月以上入役使之許參房窠事
一貳式之後若有怕苛圖囑違越差任者等 稟除汰事

己巳七月 日

是節日

為成給事書吏重來人之準十朔後許參房窠者即防過其越次讓等之階梯也乙邊人代讓屬者則準十朔後許參房窠申邊人代讓屬者雖滿十朔勿許參窠選待翼年派房始為許參窠是亦房窠第次既有當初定規則其時分等宜有參量者存以其任類厚薄之前後稍異折不可階階於其間矣若沒有違越定

庚午十月 日

大

武園差生獎者等案除汰之意著武施行事奉承
大院位教是 分付是如手依此略道奉行求久勿督宜當向事
為成給事書吏廳凋殘難支之狀曾已洞悉無餘是在果所謂遺財

庚午十月 日

邊巖石錢貳拾兩

保羅求道
權求瑞錢貳拾兩
保梁尚根
羅求道錢貳拾兩
保邊巖石
金性汝錢貳拾兩
保權未瑞

書吏廳房窠許參朔教釐正節目

為成給事各邑吏任從有次差給事前後
飭教嚴嚴 廟等申讓外邑舉行靡不容極本營則甲寅公堂可以為法獎息聞之榮矣夫何行偽層生重來者雖於搜房前一日入屬不計朔數一從座次觀皆參窠則居下之意謂今年當為某寮是如可忽地見退或有失望或有落空齋齋莫甚及夫去歲作定朔數追成節目而遵行未幾重來怯勢之類藉典踳往圖為委任獎復如前島在其定式之本意或莫重 朝防無難毀制苟有委性宰容若是在對揚之道不可不矯揉更敬故具由仰稟于
大院位教是後另成節目為去手從茲以往復屬者自行下月至搜房月未滿十朔者更勿許參窠是矣如是定式之後復若有躡等圖差者則當該吏之施以當律無容更議責當有所悌恪勤遵守求久勿督宜當向事

後

自來無多歲入則有定數用下則無限節即由於舊府承發之付於房窠故也徑今為始承發窠名色并為革罷以連山也及戶禮復合為一窠給代於承發窠次之吏以信川也色作馬窠給代於本府承發窠次之吏是違承發段出細文簿亦係屬務也不可不以謹慎之吏擇定舉行而一年勤勞亦所當念故以東書員鴨汀書員付之管承發刑石書員日用書員付之本府承發以而剛勝之資是矣書員稟行在於冬三朔則自有相妙之端承發舉行段至十月為始翌年九月至年十二朔使之交替是矣若廳用等節書吏中擇定老練勤幹者十二人輪回主管之意并為貳式成節目以給而去手依此略道奉承久勿督宜當向事

庚午閏十月 日

之則一百兩傳檢太涉露星故自該廳使之收議後同傳檢錢加定一百兩合二百兩酌定若成節目以給而去手自今以往依此例水遵勿督宜當向事

庚午閏十月 日

為成給事書吏房窠中戶籍也此非原定房窠也故每歲式年有攀援者稱以窠外之窠曲徑圖差紛競其甚是如乎此後段量其料賴水付於原房窠中以杜橫差之弊為務將此成節目水遵勿督宜當向事

庚午十一月 日

為成給事書吏房窠今既釐正而其中除書吏及守僕初無定例每年沙房時不無圖差之弊此亦屬次差給與圖點差出間指一定規之意有所傳令是加尼諸吏等所告內除書則能書者可堪任非人人所可填差者則肩差一故不可舉論每於搜房之

官奴採藥完文

為成給事本營各肆凋殘難支之狀曾已領略而任任以後洞察巨細
詳究物議則所謂官奴以逃去過半僅存名色應行使役備數無入此
實由於賴薄之致而惟其如是故每每厭避不願差出其或強令責
是而日益蕩敗駸駸然收拾無何是如故聞甚於前講究其蕪弊方
略後營貳市輪回之細釐危而使之割付取其稅入以為沽酒補藥之資
是矣該廳之成採與否惟在於此危之完不完如何備近私設之祭廳
覘德岫加里川龍水洞大皇橋果岫等六處危而自今為始一切禁坊
使細釐危無與與販之意成完文以給高去乎永久遵行宜當向事

延節日

色麗四名處別下錢壹百兩達授於聞人金化龍使之取殖而每年

刺條參拾貳貳月捧入以為衣資補用之資永久勿替宜當
向事

聞人金化龍錢壹百兩
保首奴二完孫

己巳六月 日

官奴節目

為成給事即者官奴等所許內以為城內外無稅田畜去丁
友年分尺量執卜屬之矣廳俾補水并蔬菜等進排之需
而別成冊子使之典守矣稅近漏落以致轉相賣買之境使
成私吞進排之節蕩掃無餘是如為置取考量察察巨物職
則卜數第次昭然可據是如于既係公田需用且緊而至若見
失私自轉賣者誠甚非當故特定將吏尺量推尋一還付於
官奴廳以為補獎資生之方修正量察並以完文成給高去乎後
若有藉託潛賣之弊則公田公畜與他者重賣賣者並依律文
施行為給今或以轉賣為說欲推價本勢貳起聞者則亦依公
田潛買律嚴勘處斷以此遵守永久勿替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使令廳節目

為成給事本營各肆凋殘莫甚致令方次第補錄而使令者處
錢貳百兩自營稍給使之取須補用是矣典守之方難保其承
欠達殺於該聞及各屋人處每年調發陸拾兩分兩等收捧而
參拾兩則六月當納參拾兩則臘月當納兩收錢有自改逐年輪
回各別舉行伴無違限抵罪之意後發成節日以給高去乎勿
替遵行宜當向事

己巳六月 日

立慶梁尚根錢貳拾兩
保邊叢石

權承瑞
羅承道

邊叢石錢貳拾兩
保梁尚根

金性汝

羅承道

保邊叢石

羅承道

權承瑞

保梁尚根

邊叢石

權承瑞

保梁尚根

金性汝

羅承道

南門外旅閣主人李英根錢貳拾伍兩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保李性九

朴珪和

李性九錢貳拾伍兩

保李慶熙

朴珪和

李性九

保李慶熙

李性九

李慶熙

保李英根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保李慶熙

李慶熙

延節日
南門外旅閣主人李英根身死後不為設始尼公叔賣家於李性九李
慶洽賣家於朴珪和故同原錢一百兩沒渠願更為分排達授後發節目
為去乎永久遵行宜當向事
庚午八月 日

南門外旅閣主人李慶熙錢伍拾兩

保李性九
朴珪和
李性九錢貳拾伍兩
保李慶熙
朴珪和
李性九
保李慶熙

二百七十三兩八錢四分 實米... 金銀三千九百八十三兩八錢四分
下五百四十八兩八錢 移送賑濟庫米一百三十四石價每石而式
一十八兩八錢 戶房書吏米百五十七石價每石而式
七百兩 榮應庫色米一百石價每石而式
五百五十八兩三錢三分 放料米一百石價每石而式
三百七十四兩九錢一分 移送獎糶庫
合下三千九百八十三兩八錢四分
己巳九月二十七日 傳令中軍
為知悉舉行事本府魚負軍羅之後實米之年例上下事甚無義自
今秋為始同米九十石一並勿施付之本營軍需事奉承
大院位教是 教意茲以傳令為去于即為分付於禮庫色吏更勿出
給宜當向事

大同色營需餘米六十九石五斗內
下二十八石 圓頭漢七名 每名四石式
六石 營庫子一名 廳庫子一名 各三石式
合下三十四石
餘在米三十五石五斗 出給大同色吏
運節目
南門外場旅閣四處內(處容王李英根身死勿殺故同軍奔採柴
賊盧百貳拾兩排定於三處旅閣主人為去于依此採納宜當向事
庚午八月 日

錢糶糶庫上下 米榮應庫上下
己巳五月 日
一四仲朔所用紙筆墨亦自榮應庫上下次
白紙或火扇紙拾枚或日次每射會時十
筆或柳墨墨丁一年如下

火砲科節目
為成給事凡係武備何莫非閱重而至若火砲尤為此時之不可以
忽者故既有 朝令初設砲科惟以擇人材壯軍容為務則何以擢
料者之地閣微下專阻其疏通之階乎本營段母論京邑軍中登
第者遠即差授別軍官而旗牌別武及守操軍官等校列無碍移
差以示勸獎之意事著成節目為去于依此永久遵行宜當向事
己巳五月 日

將官射會節目
在昔設營衙職我
正廟朝達 孝宏護為掛設
仙履也為掛敵京師也籌略之宏備規模之鎮密有非敢容議
於今而至若壯軍容而擊王基也果非尋常閱防之可比則九係
鍊兵訓武之方寧或忽也哉所以每朔賞試射砲依已例遵行然猶
有未盡到處故強茲以來不論校吏軍民人等講射馳放中從前長
熟測之意屢屢令飭姑未知未效之如何倘大此營所可欠者無
將官射會之勸獎一欵且見今多改權鍊之日不可無射會之舉故
試技之方賞罰之節一依營門例酌應事件條列于以永久遵行宜當向事
試射規矩
一柳葉箭八巡尾箭一巡騎騎一巡合十巡取四中
一諸將官散在外村與屬邑遂朔一二次赴試似頗去未特以四仲

朔設行而其間三朔條合試計劃是矣勿論京朔只以一次
或磨鍊是齊
一夏冬試技時騎駿段以其馬路冰泥依京營例以柳葉箭代
試是齊
施罰
一營下將官校初次滿四矢對番百再次未滿四矢對番六日三次未滿四矢對番
九日四次未滿四矢對番十五日足齊
一初次無分對番六日再次無分對番三次無分對番是齊
一講陣俱不則對番三日兩次俱不則對番二日三次俱不則決棍連四次
俱不則決去是齊
施賞
一適一年計對終朔賞而射居首者米壹石或代錢肆兩講居首者米半石木
壹天代錢貳兩磨鍊是齊

己巳五月 日甘結判官
右甘為士夫家糶糶時墓上閣祭廳三物幕之分定各面及活路
各站屏帳鋪陳等屬即是一府之大殯殮也經是役容入多至
數百金少不下四五百金而全數責徵於民間惟復殘民抑又何堪
此等民弊不可不痛革乃已仍于茲以發甘為去于從今以往墓
閣祭廳三物幕屏帳鋪陳遮日分定一狀營府間一不許施之意
令飭各面著為定式永久遵行宜當向事

將吏廳節目
為成給事凡係在土者護之責惟在舍者之勤慢而如非其人
百弊俱生隨以廢章歸於闕土勢所必然是在如中本營屯土
處在境外任他守護者非今斯今而挽近舍者各色輒稱等內
交符甚至班戶輪回圖差惟事利己之資專昧務本之方播耘收
獲每失其宜移作套耕不物臨時轉成痼疾居民無以安堵此
土舉將陳廢如此則傷在其舍者之本意乎自今以後各屯舍者
必以屯底居民中另擇其可堪者使之隨行是矣如有身故與犯科
之不得不改差者使該屯居民從公擇之使藍色輪回住 粵于
峴官以為聽 分付差代之意茲成節目為去于揚付于將吏廳
壁常目格遵宜當向事
己巳五月二十日



華營
 各色軍兵色驅使令等料布燔燔即日
 高成給事本府以拱護重地陞為留營體貌既尊開防增軍節制規模何異非
 昔年 廢裁攸暨而與京營相表裏素稱畿輔大都倉矣在營練過數朔凡百事務雖未及到底周察而制置頗久弊源日滋軍容凋殘法紀解細若復因循任置則實非繼述之義而伏承
 院位教是 分付矯揉更張之方次第講究是倉米所謂見隸輩長待鈴下後煩料殘之致舉皆規避未免苟充營操之昌披莫此為甚寧不慨歎哉蓋春兵足食在於裕財而裕財則無他策是在如中各浦口與旅開既屬本境尚無稅納之定例定是未遑事也故覽閣於渠等參互其物論分等磨鍊則一歲而練合為壹千壹百捌拾兩是遠三島屯倉音私耕樹石落所出租叁拾壹兩食主人沾溉餘伍拾柒石

內除出其叁拾石合租陸拾石並屬之於七色軍兵是亦至若奴令則別無割給之資故錢叁百兩自營明特為捐給使渠矣廳使取頭以為補用之意著成節目應行條件列錄于左為去手永久勿替恪勤遵行宜當而事
 己巳五月 日
 後
 厘大房錢叁百兩
 甌浦船主肆處錢肆百兩
 新興浦船主壹處錢壹百兩
 新星浦船主壹處錢壹百兩
 濱汀浦船主壹處錢壹百兩
 南門外場旅開肆處錢壹百貳拾兩
 烏山場旅開壹處錢叁拾兩

一稅納錢壹千壹百捌拾兩既分而等捧上則七月所捧伍百玖拾兩當朔分給臘月所捧伍百玖拾兩亦為當朔分給租陸拾石秋收後分給是秋收者檢軍摠一名路當錢肆兩就右錢餘條中臨其時便上下是齊是節日
 各場地稅合屬於厘大房故軍林繫錢叁百兩每年分等納上事成節日後今年七月餘壹百伍拾兩而捧上排用是加尼及至秋間所謂地稅遂屬於馬廐直在馬等牌處則厘人許已排定叁百兩不可全數責納故今十二月折半條壹百伍拾兩分捧於厘人馬廐直等牌等處使之上下是在果自庚午為始上項錢叁百兩塔壹百兩式分於三處七臘兩兩分而等依拾兩式排納以為出給之意是成節目區別後錄而去手依此遵行宜當而事
 己巳十二月 日
 後

上項厘大房排定錢叁百兩而
 壹百兩 厘大房
 壹百兩 馬廐直
 壹百兩 在馬等牌
 每年七月各伍拾兩式納上十二月各伍拾兩式納上事
 五朔錢料以本色米磨鍊上下棟 己巳十月朔為始
 戶所米一百一石六斗
 米四十六石
 米五十五石 八色庫條
 米六十石 在馬庫條
 榮應庫米一百石
 放料所餘在米一百一十一石十斗
 外落庫移送賑濟庫中米一百一十二石十四斗

旅開貳處錢叁拾兩
 合錢壹千壹百捌拾兩
 以上每年分而等折半則七月納上折半則臘月納上欠
 三島屯倉音私耕樹石落打租叁拾石
 食主人沾溉租叁拾石
合租陸拾石
 字子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貳百陸拾肆兩
 巡令手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貳百陸拾肆兩
 吹鼓手二十四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貳百陸拾肆兩
 燈籠手十二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壹百貳拾肆兩
 大旗手十二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壹百貳拾肆兩
 細樂手十四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壹百貳拾肆兩
 帳幕手十名 每名錢拾壹兩貳式 合錢壹百貳拾肆兩

錢壹千壹百捌拾兩而三島屯倉音私耕樹石落打租叁拾石
 一三島屯倉音私耕樹石落打租叁拾石每年以首勤仕輪回差定一名使之下去者檢是矣所收優為叁拾石故叁拾石允能定以納是遺右番禁烟物力錢拾壹兩貳式分即是由來之數也此則以叁拾石納上外餘剩租也作錢備給於該屯藍色為額上項錢分排餘條肆兩段秋收者檢之人往四時以路需工下是齊
 一各浦及旅開稅納是物貨買賣之文餘條中除出者也補有官物若或分錢加捧之與則該主人稅以當律如此協念是齊
 一各浦既有公稅則不可無顯標標之方是如字浦民中若有官差推擬之時則例給錢以奉而酌定滯因官府時情費錢亦以奉而酌定以虧民力是齊
 捐給錢叁百兩而段使令廳貳百兩營色驅使四名處壹百兩使渠矣各別典守每年取租以為補用之資是齊

魚貢軍羅米九十九石
 合歲入米七百四十二石內
 下米八十石 字子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八十石 巡令手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八十石 吹鼓手二十四名 每朔每名各十斗
 米七十石 右三色牌頭隊摠加料
 米三十二石 大旗手十名 每朔每名各十斗
 米四十石 牌頭隊摠加料
 米五斗 牌頭加料
 米二十六石十斗 帳幕手十名 每朔每名各八斗
 米五斗 牌頭加料
 米四十二石 細樂手十四名 每朔每名各九斗

米五斗 牌頭加料
 米十三石五斗 兎細樂手十名 每朔每名各四斗
 米二十石十斗 塘報手一名 每朔八斗
 米二十石十斗 別牙兵一名 每朔八斗
 米一石十斗 大砲手一名 每朔五斗
 米十五石 從事官巡牢五名 每朔每名各九斗
 米九十三石十斗 使令三十名 每朔每名各九斗
 米二十七石 榮應庫使令九名
 米一百七石五斗 官奴四十六名 每朔每名各七斗
 米十七石五斗 加料
 米七十二石 官婢三十八名
 合下七百四十二石
 錢歲入三千七百四十四兩上項各色軍兵食料等三錢錢米每石五兩貳錢歲入三千七百四十四兩上項各色軍兵食料等三錢錢米每石五兩貳錢

華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新定式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節目

- 華營各色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
- 華營將官射會節目
- 華營火砲科節目
- 己巳五月日甘結判官
- 華營將吏廳節目
- 華營官奴揀弊完文
- 華營官奴廳節目
- 華營使令廳節目
- 華營廳直廳揀弊節目
- 華營書吏廳房窠許參朔數釐正節目
- 華營各面軍政洞布節目
- 華營各面社倉新設節目
- 華營各色軍摠蘇弊節目
- 華營穀作錢新定式節目
- 華營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차례

원문	華營各色軍兵及色驅使令等科布矯弊節目	006
	華營將官射會節目	008
	華營火砲科節目	009
	己巳五月 日 甘結判官	009
	華營將吏廳節目	009
	華營官奴球弊完文	010
	華營官奴廳節目	010
	華營使令廳節目	010
	華營廳直廳球弊節目	012
	華營書吏廳房窠許參朔數釐正節目	012
	華營各面軍政洞布節目	014
	華營各面社倉新設節目	021
	華營各色軍摠蘇弊節目	023
	華營穀作錢新定式節目	023
	華營本府各浦稅納新定式節目	024

화영신정식절목
華營新定式節目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